연구자료 14-02

KIEP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강준구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4-02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강준구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14-02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인 쇄 2014년 7월 7일
발 행 2014년 7월 11일
발행인 이일형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쇄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T. 031-421-8418

ⓒ20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5,000원
ISBN 978-89-322-2390-2 94320
978-89-322-2064-2(세트)

국문요약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강준구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Mode 4) 논의는 UR 협상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주로 기업내 전근자(ICT)와 사업상 방문자(BV) 등을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계약서비스공급자(CSS) 및 독립전문가(IP)에 대한 양허 확대가 이루어지고, DDA 서비스 협상에서는 물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RTAs에서 개도국들의 Mode 4 자유화 확대 요구가 더욱 강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영연방 3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이 개도국과 체결한 일부 RTAs에서는 고용시장 접근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으로 양허가 이루어지는 등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DDA 서비스 협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도국들과 추진 중인 양자간·복수국간 RTAs에서 개도국들의 Mode 4 자유화 확대 요구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와의 통상협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근 통상협상에서 다루고 있는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주요 협상 상대국의 Mode 4 협상 동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다자통상협상 및 최근 체결된 주요 RTAs에서 Mode 4 논의

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Mode 4 협상 대응 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다루고 있는 Mode 4의 양허 대상은 Mode 3와 관련된 Mode 4 또는 Mode 3와 관련되지 않는 Mode 4만을 포함하면서 고용시장의 접근을 불허한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선진국과 중진국을 중심으로 CSS, IP 등과 같이 Mode 3와 관련되지 않은 Mode 4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통상협상에서 Mode 4 양허 대상을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 당사국의 이해에 따라 유연하게 고려한다는 점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선진국의 경우 자국이 경쟁력을 갖는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CSS 및 IP 양허에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개도국은 Mode 4 양허 대상에 숙련노동이나 비숙련노동을 포함할 것과 선진국의 고용시장 접근까지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도국은 관심 분야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양자간 조율을 거쳐 Mode 4 양허 대상이 정해지고 있다.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에 있어 선진국들은 자국의 정책 기조에 기반을 두고 일관된 Mode 4 양허를 추진한다는 특징도 참고할 만하다. 실례로 미국이나 일본 등은 국내 법과 제도에 근거해 Mode 4 양허에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영연방 3국은 이민정책과 노동정책을 고려한 Mode 4 양허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RTAs에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Mode 4 양허 수준이 개도국보다 높은데, 개도국들은 자국의 Mode 4 추가 양허에는 소극적이면서 선진국에는 높은 수준의 양허를 요구하는 이중성도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들어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전문직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약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격의 인정이 CSS와 IP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자격의 인정은

인력을 수용하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인력 송출국에서의 교육제도와 자격제도의 선진화, 그리고 이해 당사국간 MRA 체결이 병행되어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우리나라의 Mode 4 협상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도 중장기 외국인력정책의 기반 위에서 일관된 Mode 4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이 자국의 법적·정책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된 Mode 4 양허 협상을 전개함으로써 개도국의 과도한 개방 요구를 차단하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Mode 4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다자통상협상이나 복수국간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 제고 및 기대 이익의 극대화, 나아가 세계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이해를 같이 하는 관련 국가들과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개도국과의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GATS가 포괄하는 범위에서만 Mode 4를 논의하고 이를 벗어난 요구는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해야 하며, CSS 및 IP 양허의 경우 우리의 관심 분야를 발굴해서 양허 대상 직종에 포함하고 협정당사국 모두가 공통으로 양허하는 적극적·공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넷째, 통상협상에서 Mode 4 양허의 출발점이 되는 전문직 직종・업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유지해야만 우리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다.

다음으로 Mode 4 협상을 통해 우리 전문직서비스 인력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국내 고용시장의 충격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질의 외국 전문직서비스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국내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국내의 세부 분야별·직종별 인력수급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에 기반해 중장기 CSS·IP 양허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중장기 외국인력정책에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국내 부족 인력의 도입과 과잉 인력의 해외진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유용

할 뿐만 아니라 협정 상대국의 Mode 4 개방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Mode 4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전문직서비스 인력이 불법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Mode 4 양허 대상 인력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CSS 및 IP 형태로 도입되는 인력은 불법체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보다 이들 인력을 도입하는 국내 기업의 불법적인 활용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SS 및 IP 인력을 포함한 국내 사용기업까지 상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Mode 4 협상을 통해 우리 우수 전문직서비스 인력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외국의 우수 인력을 도입하기 위해 국내 전문직 자격의 취득(교육과정 포함) 및 관리 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선진국과의 FTA 협상에서 CSS 및 IP 양허 확대 성과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전문직 자격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 협상 성과는 무용지물이 되며, 국내의 자격 제도가 미흡한 경우 개도국의 인력을 충분하게 검증하지 못하여 우수 인력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국내의 전문직서비스 교육제도와 자격제도를 서둘러 개선해야 하겠다.

차 례

국문요약 ····· 3

제1장 서론 ····· 11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가. 연구의 배경 ····· 11
나. 연구의 목적 ····· 12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 14
가. 선행연구 현황 ····· 14
나.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 15

제2장 통상협상과 인력이동 ····· 18
1.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 18
가. 국제적인 인력이동의 유형 ····· 18
나.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 20
다. GATS Mode 4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 30
2. 다자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 32
가. UR 협상 ····· 32
나. DDA 협상 ····· 36
3. 지역무역협정(RTAs)에서 Mode 4 논의 동향 ····· 42
가. RTAs 현황 및 특징 ····· 42
나.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 45

제3장 주요국의 RTAs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 ····· 49
1. 개요 ····· 49
2. 한국 ····· 51

가. 우리나라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 51
나. 주요 기체결 FTA Mode 4 양허 내용 ····· 54
3. 주요 선진국 ····· 57
가. 미국 ····· 57
나. EU ····· 60
다. 일본 ····· 63
라. 캐나다 ····· 66
마. 호주 ····· 69
바. 뉴질랜드 ····· 72
4. 주요 개도국 ····· 74
가. 중국 ····· 74
나. 말레이시아 ····· 76
다. 인도네시아 ····· 78
라. 베트남 ····· 79

제4장 통상협상에서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 80
1. 연구 결과 요약 ····· 80
2.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 83

참고문헌 ····· 89

Executive Summary ····· 95

표 차례

표 1-1. 연구의 차별성 ····· 15
표 2-1. 일반적인 국제적 인력이동의 주요 유형 ····· 19
표 2-2.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Mode 4의 유형 ····· 25
표 2-3. 체류기간 및 Mode 3 연계 기준 Mode 4 유형 ····· 26
표 2-4. 해외취업의 유형과 Mode 4 관련성 ····· 28
표 2-5. 주요국의 UR 서비스 Mode 4 양허 현황 ····· 35
표 2-6. 주요국의 DDA 서비스 Mode 4 양허 현황 ····· 38
표 2-7. 주요국의 DDA 서비스 Mode 4 CSS·IP 양허 내용 ····· 40
표 2-8. RTAs 체결국의 구성 ····· 44
표 2-9. RTAs 서비스협정의 유형 ····· 45
표 3-1. 분석 대상국가 ····· 50
표 3-2.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Mode 4 양허 개관 ····· 53
표 3-3. 한·EFTA FTA Mode 4 양허 내용 ····· 55

그림 차례

그림 2-1. 세계 RTAs 협정 현황(WTO에 통보된 발효 중인 RTAs 기준) ···· 43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20세기 후반에 들어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진보에 의해 운송수단이 발전하고, 세계적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기조가 강화되면서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주요 생산요소의 하나인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요 생산요소인 노동의 국제적인 이동은 자본의 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상황이며, WTO가 출범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 ment Agenda) 협상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도 노동의 국제적인 이동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경을 초월한 인력의 이동은 국가 또는 국경의 개념이 확립되지 못했던 고대 사회부터 존재해 온 현상이지만 주목을 받을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년 국제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출범되면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인력의 이동이 증가하였고, 1970~1980년대부터는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s)을 중심으로

세계 전역의 생산요소를 활용하기 위한 대세계 직접투자가 증가하여 이를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투자장벽 완화가 진전되면서 투자활동과 동반된 인력의 국제적인 이동 또한 점차 확대되었다.

그러던 중, 우루과이라운드(UR: Uruguay Round) 협상에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이 제정되어 국경을 넘나드는 인력의 이동까지 규율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인력이동 이슈가 통상협상의 논의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즉, 국제적인 다자간 서비스 무역규범인 GATS에서 서비스 무역의 한 형태(Mode 4)로 자연인(Natural Persons)의 (현지) 주재를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별도의 부속서를 포함함에 따라, UR 협상에서 각국들은 서비스분야의 인력이동 개방 약속을 포함하는 양허표를 제출하였고 그것은 WTO 출범과 함께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또한 다자통상협상에서 GATS를 제정하고 Mode 4를 포함하면서 WTO 출범 이후 추진된 지역무역협정(RTAs: Regional Trade Agreements)에서도 대부분 Mode 4 개방 약속을 담고 있는 서비스협정을 포함하는 양상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통상협상에서 Mode 4 확대를 위한 개방 약속이 처음으로 포함된 것은 UR 협상에서가 아니라 UR 협상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체결된 미국·캐나다 FTA와 NAFTA에서이다. 그러나 UR 협상을 통해 GATS가 제정되고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되면서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Mode 4 이슈를 포함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WTO 출범 이후 추진된 RTAs 서비스 협상 중 다수가 GATS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면서 RTAs에서 Mode 4 이슈를 포함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나. 연구의 목적

WTO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다루고 있는 Mode 4 논의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을 전후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

다. 환언하면 WTO 출범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Mode 4 양허의 대상은 GATS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문직 서비스 인력이었고, 그 범위는 고용시장의 접근을 배제한 일시적인 체류에 제한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DDA 서비스 협상에서 개도국이 숙련·비숙련 노동의 이동을 자유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개도국 간 RTAs에서는 Mode 4 분야에 있어 GATS에서 다루는 범위를 넘어서는 양허가 포함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DA 서비스 협상에서는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이 높은 수준의 Mode 4 개방을 주장하고 있으며, 복수국간에 추진되고 있는 TiSA(Trade in Services Agreement) 협상에서도 일부 개도국이 Mode 4 양허 확대를 주장한다. RTAs의 경우 중국·뉴질랜드 FTA, ASEAN·호주·뉴질랜드 FTA,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페루 FTA 등에서 고용시장 접근을 일부 허용하거나 전문직종 외에 숙련노동과 관련된 직종까지 양허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처럼 2000년대 중반 이후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바, 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협상에서의 Mode 4 논의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Mode 4 양허 현황을 분석하여 국제적인 양허 추세와 주요국의 협상 전략을 파악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Mode 4 협상 대응 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DDA 서비스 협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Mode 4 논의 동향을 분석함은 물론 최근 체결·발효된 주요 RTAs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통상협상에서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Mode 4 쟁점을 도출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가. 선행연구 현황

통상협상에서의 Mode 4 분야 이슈에 대해서는 국내외에 여러 가지 연구가 존재한다. 김준동 외(2008)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독립전문가 분야의 협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지나(2010)는 중국의 Mode 4 협상 전략을 분석하여 한·중 FTA Mode 4 협상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외국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 OECD, WTO, World Bank, IOM 등을 중심으로 Mode 4의 정의 및 범위, 이에 대한 선진국 및 개도국의 입장, Mode 4 자유화 부진의 원인, Mode 4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이후부터는 Mode 4의 측정 방법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선행연구 중 본 연구의 목적 및 내용과 가장 유사한 것은 Stephenson and Hufbauer(2010)의 연구인데, 여기에서는 주요 선진국이 개도국과 체결한 RTAs를 분석하여 Mode 4 양허의 내용 및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조정윤 외(2013)는 김준동 외(2008) 및 Stephenson and Hufbauer(2010)가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 및 선진국의 Mode 4 양허 내용을 검토하고 자격의 국제통용성 측면에서 특징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2008년까지 체결·발효된 RTAs를 중심으로 Mode 4 양허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주요 선행연구들은 특정한 Mode 4 유형(IP 등)이나 특정 국가(중국) 등을 주로 분석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이전과 다른 Mode 4 논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바, 최근 다자통상협상의 논의 동향은 물론 근래에 체결된 주요 RTAs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나. 연구의 내용 및 차별성

본 연구는 2008~13년까지 체결된 주요 RTAs Mode 4 양허 내용 등을 추가로 분석함으로써 최근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을 반영하고,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의 Mode 4 협상 과제와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특정한 Mode 4 유형이나 국가가 아닌 통상협상에서 다루는 모든 Mode 4 유형과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국가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통상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1-1. 연구의 차별성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김준동 외(2008).『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 논의 동향 및 IP 양허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IP 양허의 국내 영향과 대응방안을 제안
		연구방법론	선행연구 문헌조사, 주요 RTAs 협정문 및 WTO 서비스 양허표 분석, 국내 고용현황 및 비자 유형별 외국인 취업자 통계 분석, 주요 업종별 IP 양허에 대한 업계·전문가 설문조사
	2	과제명	여지나(2010).『중국 FTA 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연구 : 중국 기체결 FTA 협정문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통상협상에서 중국의 주요 관심사인 인력이동 협상 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중국과 협정 상대국의 Mode 4 양허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중 FTA Mode 4 협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연구방법론	중국의 기체결 FTA 협정문 분석, 면담조사(뉴질랜드)
	3	과제명	Stephenson, S. and G. Hufbauer(2010). "Increasing Labor Mobility: Op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 new trends and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countries*, edited by Engman, M. *et al.*(2010), pp. 29-66. The World Bank.
		연구목적 및 주요연구내용	국제적인 인력이동의 형태와 특징 검토, 주요 선진국(미국, 캐나다,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기체결 RTAs Mode 4 양허 내용 분석, 양자간 노동협정상 Mode 4 관련 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 촉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연구방법론	주요 선진국의 RTAs 협정문(선진국·개도국 간 RTAs 중심) 분석, 양자간 노동협정 분석

표 1-1. 계속

연구 차별성	연구목적 및 내용의 차별성	통상협상 전반의 Mode 4 논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특징 및 향후 예상 쟁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통상협상 대응방안 및 외국인력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도출 - 특히 Mode 4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도국과의 제반 FTA 협상 및 DDA 서비스 협상에 효율적이면서 일관성있는 대응방안을 도출 - 아울러 한·미 FTA 및 한·EU FTA를 통해 마련된 전문직서비스 (자격) 상호인정 작업반(WG) 논의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
	연구방법론의 차별성	관련 협정문 및 양허표 분석 외에 다자·지역 통상협상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Mode 4 관련 당사국의 對한국 Mode 4 주요 요구사항을 점검하고 다자·지역 통상협상 전반에서 Mode 4 협상방향을 도출
	기타 차별성	최근 통상협상에서 이루어진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을 분석 - 2000년대 후반부터 통상협상에서 개도국의 Mode 4 자유화 요구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며, 최근 체결된 주요 RTAs 협정에서 GATS+ 양허 사례가 다수 등장하여 최근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 시사점 도출이 매우 필요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2장에서는 통상협상과 인력이동이라는 주제하에서 통상협상에서 다루는 인력이동의 정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WTO로 대표되는 다자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을 검토하며, RTAs에서 Mode 4 논의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기체결 RTAs Mode 4 양허 내용을 분석한다. 여기에서 주요 국가라 함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Mode 4 이슈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하며 선진국으로는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고, 개도국으로는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포함한다. 터키 또한 주요 국가의 하나이지만 터키의 기체결 RTAs에서 서비스협정을 포함한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4장에서는

먼저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의 Mode 4 협상 대응방향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협상력 제고 및 국내 대책 마련과 관련된 주요 과제를 도출한다.

제2장

통상협상과 인력이동

1.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가. 국제적인 인력이동의 유형

통상협상의 범위를 벗어나 주위에서 쉽게 관찰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제적 인력이동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현상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인력이동을 중심으로 입국 목적의 경제활동과의 관련성, 그리고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입국 목적과 경제활동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할 때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국내로 여행을 오는 외국 관광객,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입국하는 학생, 그 외에 단순한 체류 목적의 입국자 등이 있다. 이와는 다르게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인력은 국내 기업과 수출입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투자기회 발굴,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업상 방문 목적의 외국인, 해외의 본사로부터 한국 내 투자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 CEO·관리자·기타 직원, 기술전수나 공동개발 등을 위해 입국해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기술자·연구원, 국내에 있는 한국기업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 등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이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인력이동의 유형을 구분할 때 다소 모호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으로

이민을 온 외국인인데,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후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경제활동 목적이 아니라 국제결혼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전자의 유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가족은 초기 입국 동기가 단순 체류 목적이기 때문에 전자의 유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적인 인력의 이동은 체류기간을 중심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국적취득과 같이 국내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도 있으며, 관광객이나 단기 사업방문자 등 수일부터 수개월까지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경우가 있고, 해외지사 근무자 및 동반자처럼 수개월부터 수년간 중장기 체류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일반적인 형태의 국제적 인력이동을 입국 목적상 경제활동과의 관련성 및 체류기간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2-1. 일반적인 국제적 인력이동의 주요 유형

		입국목적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체류기간	단기 체류	사업(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목적 단기방문(C-1 비자) 단기 기술지도·공동개발,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등(G-4 비자)	관광객(B-2 비자) 단기연수(학생, 일반인, C-3 비자) 기타 사증면제(B-1) 또는 비영리 목적 단기방문(C-3)
	중장기 체류	사업목적 : 주재(D-7 비자), 기업투자(D-8 비자), 무역경영(D-9 비자) 외국인근로자(우리나라의 경우 고용허가제에 따라 도입된 단순노동인력, E-9 비자) 고용허가제에 근거한 방문취업(H-2 비자) 기타 E-계열 비자	학위과정 학생(유학, D-2 비자) 일반연수(D-4 비자) 중장기체류자의 동반가족(F-3 비자)
	영구 거주	국적취득이민(투자이민 등)	국제결혼(외국인 신부)

자료: 출입국·외국정책본부, Hi Korea 초청/사증(VISA) 홈페이지(검색일: 2014. 1. 16)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일반적인 형태의 인력이동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통상협상에서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지 않고 매우 제한된 범위, 즉 서비스분야만을 대상으로 하고, 주재국의 고용시장 접근 가능성이 배제된 일시 체류의 성격을 가지며, 별도의 자격 취득이나 높은 수준의 기술 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한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통상협상의 대상이 되는 국제적인 인력이동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GATS 조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협상에서 국제적인 인력이동에 대한 규범은 UR 협상에서 논의되었고, GATS에 관련 조항과 부속서가 포함된다. GATS 제1조 제2항의 라(Article I.2 (d))에서 서비스 무역의 네 가지 공급형태(Mode)[1] 중 넷째 형태로 "한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 을 정의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GATS가 규정하는 Mode 4는 다음과 같이 한정된다.

첫째, 여타 분야의 인력이동은 배제되며 서비스분야에서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이동으로만 제한된다. 일부 예외적인 RTAs 협정에서는 서비스분야를 넘어서는 업종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GATS에 따르는 서비스협정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RTAs에서는 Mode 4를 양허할 때 그 대상이 서비스분야로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1) GATS Article I. 2에서 정의된 서비스 무역의 네 가지 공급형태는 ① 한 회원국의 영토로부터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로의 서비스 공급(국경간 공급, Mode 1), ② 한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그 밖의 회원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해외소비, Mode 2), ③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상업적 주재, Mode 3), ④ 한 회원국의 서비스공급자에 의한 그 밖의 회원국 영토 내에서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자연인의 주재 또는 이동, Mode 4)이 있다. WTO legal texts 홈페이지의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중 Annex 1B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참고.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legal_e.htm(검색일: 2013. 10. 22).

둘째, 다른 WTO 회원국의 자연인(natural persons)은 GATS 제28조 카(Article XXVIII. (k))에 따라 다른 WTO 회원국의 국민 또는 다른 회원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연인[2]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의를 포함하는 서비스협정이 RTAs에 포함되는 경우 협정 당사국의 국민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연인만 Mode 4 양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업내 전근자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양자간 RTAs 서비스 협정에 기업내 전근자를 허용하는 Mode 4 양허가 포함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국의 모기업에 고용된 제3국의 국민이 RTAs가 체결된 상대국(주재국)에 서비스 공급을 위해 주재하고자 할 때 상대국의 자연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RTAs 양허 내용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 다만, UR 서비스 양허표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다른 WTO 회원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기업내 전근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RTAs가 아닌 WTO 서비스 양허(UR 서비스 양허) 내용에 따라 목적하는 국가에 주재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논의할 다른 형태의 Mode 4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셋째, GATS에 포함된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부속서(Annex on Movement of Natural Persons Supplying Services under the Agreement) 2를 근거로 할 때 GATS를 준용하는 일반적인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는 Mode 4의 범주에서 상대국의 고용시장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의 이동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를 GATS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3] 따라서 별도의 관련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고용계약에 기반을 둔 외국인력의 도입은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호주나 뉴질랜드

---

2) GATS Article XXVIII (k)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른 회원국의 자연인은 다른 회원국의 국민을 의미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다른 회원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연인도 포함한다. GTA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 국민이 없는 회원국 등을 고려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GATS Article XXVIII (k).(ii).2 참고. WTO legal texts 홈페이지의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중 Annex 1B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참고.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legal_e.htm(검색일: 2013. 10. 22).

3) 전게서, Annex on Movement of Natural Persons Supplying Services under the Agreement, 2 및 김준동 외(2008), pp. 34~35 참고.

와 같은 국가들이 체결한 RTAs를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대국의 자연인까지 포함하는 예외적인 사례도 존재한다.

넷째, 입국 후 일시적으로 체류 또는 주재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Mode 4에서 다루는 '일시적'인 체류(temporary stay)가 정확히 얼마동안의 기간인지에 대해 GTAS는 정의하지 않는다. OECD(2003)는 '일시적'의 의미는 영구 거주에 기초한 이주나 상대국 노동시장 진입 추구를 배제한다고 지적하고 있고,[4] Nielson and Taglioni(2003)는 GATS가 '일시적'의 의미를 정의하지는 않지만 영구적인 이주를 명확히 포함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의한다고 언급하고 있다.[5] 그리고 OECD(2003)에 따르면 WTO 회원국의 서비스 양허 내용을 기초로 할 때 국가·서비스분야·전문직종 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짧게는 수주일부터 길게는 3~5년에 이르는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6] Stephenson and Hufbauer(2010)도 OECD(2003)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이 의미하는 기간이 수주에서 수년까지 다양하다고 지적하고, 일시 체류와 영구 이주를 구분하는 공식 통계는 1년 미만 또는 1년 이상으로 나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7]

다섯째, GATS의 제 조항과 부속서에서 Mode 4의 정의와 관련하여 서비스 공급자가 보유한 기술의 수준(skill levens)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WTO 회원국의 Mode 4 양허 내용을 고려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학력·고숙련(higher skilled)으로 한정하고 있다.[8] 이와 같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하에서도 Mode 4 대상 인력의 범위에 대해 높은 기술수준이나 학력을 요구하는 것은 뒤에서 살펴볼 Mode 4 양허 대상의 유형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 Mode 4의 정의에 있어 유념할 사항으로는, 통상협상에서 다

---

4) OECD(2003), p. 2 참고.
5) Nielson and Taglioni(2003), pp. 7~8 참고.
6) OECD(2003), *op. cit.*, p. 2 참고.
7) Stephenson and Hufbauer(2010), pp. 30~32 참고.
8) Nielson and Taglioni(2003), *op. cit.*, pp. 8~9 참고.

루는 Mode 4에서는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공급) 계약을 수행하는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적인 이주나 망명 프로그램 등이 분야간 이동을 허용하는 반면 Mode 4에서는 서비스 공급자가 하나의 분야에 국한되어 서비스 공급 행위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형태의 국제적인 인력의 이동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다루어지는 Mode 4의 유형은 제한되어 있다. 통상협상에서 Mode 4가 포괄하는 유형은 GATS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UR 서비스 양허표나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 그리고 각국이 체결한 RTAs 서비스협정(양허표 및 유보목록 포함) 등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UR 서비스 양허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입국 및 일시 체류를 허용하는 Mode 4의 유형으로 사업상 방문자(BV: Business Visitors)와 기업내 전근자(ICT: Intra-corporate Transferees)를 포함하고, 일부 국가는 무역업자 및 투자가(T&I: Traders and Investors)를 포함하기도 한다. 그리고 WTO 출범 이후 DDA 서비스 협상이 전개되면서 DDA 서비스 1차양허안(initial offer) 및 수정양허안(revised offer)에 상업적 주재와 관련이 없는 계약서비스공급자(CSS: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와 독립전문가(IP: Independent Professionals)를 Mode 4 양허에 포함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 서비스 판매자(SS: Services Sellers 또는 Service Salespersons)가 포함되는 사례도 있다.

Nielson and Taglioni(2003)는 GATS의 Mode 4 대상이 되는 것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위로 보고 있다.[10)] 첫째, 외국 서비스 공급자가 주재국 기업과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자사의 피고용인을 보내는 것과 관련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주재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외국

9) OECD(2003), *op. cit.*, p. 2 참고.
10) Nielson and Taglioni(2003), *op. cit.*, p. 7 참고.

독립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한다. 셋째, 주재국에 설립된 외국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도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각국의 관련 서비스 양허 내용을 고려할 때 Nielson and Taglioni(2003)가 다루는 GATS의 Mode 4 범위는 CSS와 IP, 그리고 다소 넓은 범위의 ICT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GATS의 Mode 4 유형에 대해 Stephenson and Hufbauer(2011)는 각국이 Mode 4 양허에 포함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11] 첫째, 서비스의 판매 협상을 위해 또는 투자 대상국가에서 자사의 투자 타당성 조사를 위해 해외로 여행하는 외국 국민을 사업방문자 및 판매자(BVs: Business Visitors and Salespersons)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사업방문자 및 판매자는 실제 거래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둘째, 외국 서비스 회사에 고용된 사람으로 해외의 상업적 주재를 수행하거나, 그 회사의 해외 지사에 전근 보내진 사람을 기업내 전근자(ICTs: Intracorporate Transferees)로 정의하고 있다. 셋째, 주재국에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가고용된(Self-employed) 사람을 독립전문가(IPs: Independent Professionals)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무역협정에서 IP는 전문직 노동자로 제한되지만, 저기술 범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주재국에서 현지 주재(local presence) 또는 상업적 주재 없이 대상국에 있는 기업과 서비스공급계약하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 서비스 기업의 피고용인을 계약서비스공급자(CSSs: 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로 정의한다.

한편,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Mode 4의 유형을 구분할 때 상업적 주재(Mode 3)와 관련된 Mode 4인가, 또는 상업적 주재와 관련되지 않는 Mode 4인가로 구분될 수 있다. WTO(2005a, 2005b)에 따르면 사업상 방문자와 기업내 전근자는 전자의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계약서비스공급자, 독립전문가, 그리고 서비스 판매자는 후자의 유형으로 분류된다.[12]

---

11) Stephenson and Hufbauer(2011), p. 277 참고.
12) WTO(2005a) 및 WTO(2005b) 참고.

UR 서비스 양허표, DDA 서비스 1차양허안 및 수정양허안, 그리고 각국의 RTAs 서비스 협정문(양허표·유보목록 포함)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통상협상에서 Mode 4 유형을 나누어 보면 [표 2-2]와 같이 요약된다. 단,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은 국가간 공통점을 가지는 사항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유형 및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2-2.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Mode 4의 유형

유형		전문성(기술 수준)	체류		기타
			형태(기간)	체류기간 갱신	
사업상 방문자 (Business Visitors)	투자자(Investors)	상	단기체류 (90일↓)	×	상업적 주재 설립 책임자
	서비스 판매자 (Service Salespersons)	상/중	단기체류 (90일↓)	×	일반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판매 금지 (교섭/계약만 허용)
	무역거래자 (Traders)	상/중	단기체류 (90일↓)	×	일반 국민에게 직접 판매 금지(교섭/계약만 허용)
기업내 전근자1) (Intra-corporate Transferees)	임원 (Executives)	상	장기주재 (1~5년)	○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고위임원 서비스 공급 관련 업무 불가
	(고위)관리자 ((Senior) Managers)	상	장기주재 (1~5년)	○	일선 감독자 불포함 서비스 공급 관련 업무 불가
	전문가 (Specialists)	상	장기주재 (1~5년)	○	자격취득을 요구하는 전문직종이 아닌 고도의 업무 전문성 보유자
계약서비스공급자2)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		상+3)/상	중기체류 (1년↓)	×	서비스공급계약 기반 서비스 기업 피고용인으로 입국허가 신청 전 1년 이상 고용 주재국에서 보수 수취 금지
독립전문가2) (Independent Professional)		상+3)	중기체류 (1년↓)	×	서비스공급계약 기반 자가고용 형태 주재국에서 보수 수취 금지

주: 1) EU의 서비스 양허표에서는 ICT의 한 형태로 대졸연수생(Graduate Trainees)을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2) 계약서비스공급자와 독립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별도의)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Professional)를 포함하기 때문에 Mode 4 양허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료: UR 서비스 양허표, DDA 서비스 1차양허안 및 수정양허안, 그리고 각국의 RTAs 서비스 협정문의 양허표·유보목록을 토대로 저자 작성.

그리고 다자·지역 통상에서 Mode 4의 유형을 상업적 주재(Mode 3) 연계 여부 및 체류기간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표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Mode 4 유형으로는 상업적 주재 이후 투자기업의 조직관리와 전문적 기술에 관련된 기업내 전근자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외의 유형에 대해서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체류만을 허용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계약서비스공급자와 독립전문가의 경우 상업적 주재와 연계되지 않는 국제적인 인력이동의 대표적인 형태로 주재국의 기업(때로는 개인도 허용)과 서비스공급계약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주재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는 형태인데, 별도의 전문 자격 보유 여부 및 해당 분야의 종사기간, 해당 기업에서의 고용기간 등에 대한 요건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1년 이내의 계약기간 내에서만 체류를 허용하고 주재국에서 보수를 직접 수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13)]

표 2-3. 체류기간 및 Mode 3 연계 기준 Mode 4 유형

		Mode 3 연계 여부	
		연계	연계되지 않음
체류기간	단기(약 90일 이내)	사업상 방문자(투자목적)	서비스 판매자[1)] 무역거래자
	중기(약 1년 이내)		계약서비스공급자[2)] 독립전문가[2)]
	장기(약 1~5년)	기업내 전근자	

주: 1) 각국의 양허표에서 서비스 판매자를 별도로 두지 않고 사업상 방문자만을 포함하는 경우, 서비스 판매(계약체결) 목적의 사업상 방문자는 Mode 3와 연계되지 않는 Mode 4 범위에 포함된다.
2) 여타 유형과 다르게, 계약서비스공급자나 독립전문가의 경우 외국의 서비스 기업 또는 자가고용 형태의 독립전문가와 주재국 기업 또는 개인과 체결된 서비스공급계약에 기반을 두고 국제적인 인력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자료: UR 서비스 양허표, DDA 서비스 1차양허안 및 수정양허안, 그리고 각국의 RTAs 서비스 협정문의 양허표·유보목록을 토대로 저자 작성.

13) Stephenson and Hufbauer(2010), p. 37, Nielson and Taglioni(2003), pp. 6~9, WTO (1994a-1994l), WTO(2005c-2005n) 참고.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목적의 국제적인 인력이동, 즉 해외취업[14]의 제 유형과 Mode 4 적용 여부를 정리한 것이 [표 2-4]이다. 해외취업은 크게 대학생(워킹홀리데이, 해외인턴), 기업내전근자, 전문인력의 해외취업(직접취업, CSS, IP), 전문인력을 제외한 숙련노동의 해외취업(CSS, IP, 직접취업, 해외취업연수), 단순노동의 해외취업(직접취업, 해외취업연수)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보면, Mode 4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해외취업의 유형은 기업내 전근자, 전문인력 중 CSS와 IP이다. 전문인력의 해외 직접취업은 다자·지역 통상협상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일부 FTA(한·미 FTA 및 한·EU FTA)에서 자격의 상호 인정을 위한 논의를 담은 부속서가 채택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전문직의 해외 직접취업에 있어 RTAs가 일정 부분 관련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숙련노동의 CSS 및 IP를 허용하는 양허 내용은 일부 국가의 UR 서비스 양허표와 DDA 서비스 1차양허안 및 수정양허안, 그리고 다수의 RTAs에서 발견된다. 여기에서는 CSS 및 IP 대상 업종을 고등교육 학위 이수 및 별도의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전문직종 외에 요리사 등과 같이 높은 기술적 숙련성을 가지는 일부 직종도 포함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숙련노동의 직접취업이 통상협상에 포함된 경우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기체결 RTAs에서만 나타나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다.

14) 여기에서는 국내 기업에 취업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해외로 나가는 경우를 포함한다.

표 2-4. 해외취업의 유형과 Mode 4 관련성

구분		해외취업 형태	Mode 4 관련성	계약형태, 각종요건, 기타 특징
대학생·청년	워킹홀리데이	- 호주·뉴질랜드 등 총 16개국 대상 - 만 18~30세 대상, 주중 근로활동	관련 없음	- 현지 고용주와 고용계약 - 워킹홀리데이 비자(평생 1회) 취득 필요
	해외취업연수(해외인턴)	- 대학 재학 중 또는 직후 해외 소재 기업에서 취업연수 - 일본, 중국 등/관광, IT, 물류 분야	관련 없음	- 현지 고용주와 고용계약 체결. 단, 상당 수는 현지 인력알선업체와 고용계약 체결 ⇒ 현지 기업에 파견되는 형태 - 대학·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알선
기업내 전근자(ICT)	임원, 관리직, 전문가	- 국내 기업에 취업 ⇒ 해외 현지법인 근무를 위해 전근(파견)	매우 관련	- 각국의 출입국법 및 다자·지역 통상협상 Mode 4 양허(1~3년 체류) - 한·미 FTA: (기존 체류기간) 신규 지사 설립 1년, 기존 지사 근무 3년 ⇒ (개정 체류기간) 5년 - 한·EU FTA: 대졸연수생(1년 이상 계약자) 파견(전근) 허용(1년 이내 체류)
전문인력	직접취업	- 해외 소재 외국·한국 기업에 취업	일부 관련(자격 MRA 체결(미국/EU 등))	- 고용계약 기반 -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름. 미국, 캐나다 등은 별도의 전문인력 도입 기준 설정(자격 MRA 충족 필요) -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전문가 비자쿼터 부여
	계약서비스 공급자(CSS)	- 국내 기업에 취업 ⇒ 해외 소재 기업에 서비스 공급을 위해 임시 입국	매우 관련	- 서비스공급계약 기반 - 자격요건(사전 1년 이상 고용, 학력요건, 서류요건 등) 충족 필요 - 체류기간은 1년 이내의 계약기간
	독립전문가(IP)	- 국내 자가고용 형태 ⇒ 해외 소재 기업(대부분 국가) 또는 개인(일부 국가)에게 서비스 공급을 위해 임시 입국	매우 관련	- 서비스공급계약(대부분 국가) 또는 고용계약(일부국가) 기반 - 자격요건(학력요건, 기타 경력 및 서류요건) 충족 필요 - 체류기간은 1년 이내의 계약기간

표 2-4. 계속

구분		해외취업 형태	Mode 4 관련성	계약형태, 각종요건, 기타 특징
숙련노동 (전문인력 제외)	CSS/IP	- 전문인력의 CSS/IP와 내용 같음 - 일부 숙련노동 직종(요리사 등)	일부 관련 (제한된 직종만 대상)	- 전문인력의 CSS/IP와 내용 같음 - CSS/IP 양허 포함 직종이 미미(단, 캐나다, 뉴질랜드는 예외)
	직접취업	- 해외 소재 외국·한국 기업에 취업 - 일부 개인 직접투자 형태(자가고용) - IT, 공학 기사, 관광, 요리 등 분야	일부 관련 (일부 국가 (캐/호/뉴), 제한된 직종만 대상)	- 현지 고용주와 고용계약 체결. 단, 상당 수는 현지 인력알선업체와 고용계약 체결 ⇒ 현지 기업에 파견되는 형태 - 산업인력공단, 국내외 인력알선업체 등이 취업알선
	해외취업연수	- 위와 같음	관련 없음	- 위와 같음
단순노동	직접취업	- 해외 소재 외국·한국 기업에 취업	관련 없음	- 위와 같음. 단, 합법적 경로를 통한 해외취업 사례는 미미.
	해외취업연수	- 해외 소재 외국·한국 기업에 취업	×	- 위와 같음. 단, 합법적 경로를 통한 해외취업 사례는 미미.

자료: UR 서비스 양허표, DDA 서비스 1차양허안 및 수정양허안, 그리고 각국의 RTAs 서비스 협정문의 양허표·유보목록, 그 외 우리나라의 비자제도 등을 토대로 저자 작성.

다. GATS Mode 4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GATS의 Mode 4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술한 바와 같이 GATS 제1조 제2항에서 Mode 4는 서비스 무역의 넷째 형태인 자연인의 이동·주재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GATS 제1조 제1항에 따라 Mode 4에 영향을 미치는 WTO 회원국의 조치[15]는 GATS의 적용 대상이다.

그리고 GATS 제2조에 따라 제2조의 면제에 관한 부속서(Annex on Article II Exemptions)에 열거되어 있고, 그 부속서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국은 별도의 MFN 대우 면제 목록에 이를 기재하고 MFN 대우 의무를 유보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MFN 대우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각국은 별도의 MFN 대우 면제 목록에 기재한 차별적인 Mode 4 조치 외에는 모든 WTO 회원국에게 서비스 양허표의 수평적 조치에 기재한 Mode 4 양허 내용과 분야별 양허상의 양허 내용을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

GATS 제5조에 따라 WTO 자유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RTAs는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즉, GATS 제5조를 충족하는 RTAs에서 협정 당사국간 보다 높은 수준의 Mode 4 개방 약속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조치는 협정 당사국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WTO 회원국에게는 MFN 대우를 해야 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한편, GATS 제6조 제4항에서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가

---

15) 이에 해당하는 조치는 일반적 의무 및 규율(MFN 대우, 경제통합, 인정 등)과 구체적 약속(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등이 있으며, GATS Article I. 3에 따라 중앙, 지역 또는 지방의 정부 및 당국, 그리고 이들에 의해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의 조치가 GATS의 적용 대상이 된다. WTO legal texts 홈페이지의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중 Annex 1B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참고.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legal_e.htm(검색일: 2013. 10. 22).

되지 않도록 서비스무역이사회가 적절한 기관을 통해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와 관련된 필요한 규율을 정립하도록 하고 제6조 제6항에서는 전문직 서비스와 관련하여 양허한 분야에 있어서 각 회원국들이 그 밖의 회원국의 전문직업인의 자격을 검증할 적절한 절차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등 Mode 4와 관련된 국내규제의 개선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WTO 출범 이후 국내규제 관련 규범의 진전이 매우 부진할 뿐만 아니라, GATS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조치가 국가간의 차별 수단이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면 각국은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조의 제1항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국에게 차별적인 조치도 도입이 가능하다.

GATS 제16조 시장접근과 제17조 내국민대우와 관련해서는, 양허표상의 구체적 약속에 있어 Mode 4 제한사항으로 노동시장 심사(Labour Market Test)와 같은 경제적 수요 심사(ENT: Economic Needs Tests)나 쿼터 및 기타 수량적 제한요건을 둘 수 있고, 주재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거나 거주요건 등을 둘 수 있다.[16] 실제 일부 국가의 UR 서비스 양허표에서 ENT를 두는 사례도 발견되며, 특정 분야별 양허에서 대표 CEO에 국적요건을 부여하거나 국적에 따라 이사진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주재국 거주를 요구하는 경우, 전체 전문가 중에서 외국 전문가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수를 제한하는 경우 등이 있다.

GATS 제14조에 따르면, 유사한 상황하에 있는 국가간에 자의적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적 수단이 되거나 혹은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는 방식이 아닌 일반적 예외 조치, 안보상의 예외 조치는 허용된다. 따라서 각국은 GATS 제14조 및 제14조의 2를 충족하는 Mode

16) Dawson(2013), pp. 9~10 참고.

4와 관련된 조치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GATS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부속서 1에서 이 부속서가 "서비스의 공급에 관련하여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인 자연인 및 회원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한 회원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에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고, 이 부속서 2에서는 GATS가 "회원국의 고용시장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그리고 영구적으로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체류에만 GATS가 적용된다는 원칙을 나타내고 있다.[17]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속서의 4에서는 각국이 양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의 출입국을 규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18]

2. 다자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가. UR 협상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1947년 GATT 출범 이후 UR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다자통상협상에서 Mode 4를 다루기 위한 움직임은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서비스의 거래와 세계 전역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투자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그것에 동반된 인력의 이동 또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1986년부터 시작된 UR 협상에서 국제적인 서비스 무역 규범인 GATS가 제정되고, 그 속에 서비스 분야의 국제적인 인력이동을 규율하는 조항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1995년 1월 1일 WTO가 출범하면서 GATS가 발효되고, UR 협상에서 각국의 서비스 양허 협상 결과를 담아 WTO에 제출한 각국의 UR 서비스 양허표

17) WTO.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nnex on Movement of Natural Persons Supplying Services under the Agreement, 2 부분 인용.
18) 전게서, 같은 부속서(Annex)의 4 참고.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UR 협상은 Mode 4를 포함하는 GATS를 제정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GATS를 기반으로 WTO 회원국들이 서비스 양허 협상을 거쳐 각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약속을 담은 서비스 양허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UR 협상의 Mode 4 논의 사항과 그 결과가 담겨진 각국의 서비스 양허표는 GATS 조항의 실제 적용, 그리고 Mode 4 양허 범위와 내용, 각국의 인력이동 관련 정책 방향 등을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앞의 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GATS 조항에서 Mode 4의 제 유형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지만, UR 협상에서 서비스 양허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BV, ICT가 Mode 4의 범위로 자리잡았으며, 그 외에 일부 국가에서는 CSS를 포함하는 등 Mode 3와 관련이 없는 Mode 4도 통상협상의 Mode 4 논의 대상임이 확인되었다. 각국의 UR 서비스 양허표[19]를 살펴보면 Mode 4 양허 대상의 정의 및 요건, 허용되는 체류기간에 있어 상호 유사한 면을 많이 갖는다는 점이 확인되지만, 각국의 입장이 반영된 차이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일반적인 기준을 두고 각국의 독자적인 출입국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Mode 4 양허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UR 서비스 양허표에 포함된 내용은 각국이 취하는 인력이동 관련 정책에 있어 최소 개방수준을 제시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환언하면, 별도의 예외적인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 모든 국가에 대해 MFN 대우를 해야 하는 다자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다자통상 협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각국의 UR 서비스 양허표에는 최소한의 개방 수준이 담기기 마련이다. 따라서 WTO 출범 이후 DDA 서비스 협상에서 마련된 각국의 DDA 서비스 1차양허안 및 수정양허안과 개별 RTAs 서비스 양허표(유보목록 포함)의 Mode 4 양허 내용을 비교하면 전반적인 Mode 4 관련 정책의 변화와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정책 기조 등을 가늠할 수 있다.

---

19) WTO(1994a-1994l) 참고.

UR 협상 결과가 반영된 주요국의 UR 서비스 양허표[20]를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Mode 4 양허를 하는 유형은 BV와 ICT이며,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유사한 정의와 요건을 두고 있다. 체류기간의 경우 BV는 대체적으로 90일 이내의 기간을 허용하고 갱신을 불허하는 반면, ICT의 경우 1~3년부터 5년의 기간으로 체류기간을 부여하며 주로 갱신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UR 서비스 양허표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BV와 ICT를 중심으로 양허하지만 일부 국가는 CSS나 IP를 양허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EU의 경우 법률서비스를 포함한 18개 업종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 및 체류기간 하에서 CSS를 양허하였다.[21] 일본은 BV, ICT 외에 IP 양허를 포함하는 차이점을 보이나, 내용면에서 일본의 법에 따라 법률, 회계 자격을 갖춘 개인전문가만 허용하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관련 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하며, 기업에 소속된 전문가는 허용하지 않는 등 매우 제한적으로 양허한다.[22] UR 서비스 양허 내용에서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 간의 차이도 존재한다. UR 협상 이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개도국은 선진국에 대해 Mode 4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데, 그러한 개도국의 입장과는 다르게 개도국의 Mode 4 양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확인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BV를 양허하지 않고 ICT의 체류기간은 최대 2년 이내(연장포함)로 허용하는 등 여타 선진국보다 짧은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ICT 대해서는 ENT를 두고 있다.[23] 필리핀의 경우 UR 서비스 양허표에 BV와 ICT 양허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필리핀인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는 등 매우 한정된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다.[24]

---

20) 전게서 참고.
21) WTO(1994c), pp. 7~11 참고.
22) WTO(1994d), pp. 1~5 참고.
23) WTO(1994i), pp. 2~3 참고.
24) WTO(1994k), p. 2 참고.

표 2-5. 주요국의 UR 서비스 Mode 4 양허 현황

분야	주요 내용
한국	- ICT, BV, SS 양허(자격요건) · ICT: 체류기간 최대 3년(갱신 가능) · BV: 체류기간 90일 이내 · SS: 체류기간 90일 이내
미국	- BV, ICT, SS 양허(자격요건) - 그 외에 설립 관련 업무 종사 임원, 패션 모델 및 특수직 종사자(연간 비자 인원 배정) 등에 대해 양허
EC(EU)	- 모든 회원국이 ICT, BV 허용 · ICT의 경우, 자격요건, 체류기간(관리자/전문가 3년, 대졸연수생 1년) 상이, FI 포함 3개국 외 ENT 없음; CZ 포함 9개국은 대졸수습사원 미양허 · BV는 체류기간 90일 이내 - AT 포함 17개국이 자격요건, 체류기간 제한하에서 CSS 양허 · CSS 이동 대상 업종은 법률서비스 포함 18개
일본	- ICT, IP, BV는 일정 거주기간과 자격 요건으로 양허 · ICT: 체류기간 최대 5년 · IP: 일본 법에 따라 법률, 회계, 자격을 갖춘 개인 전문가(기업 소속인 불허), 체류기간 최대 5년,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 BV: 체류기간 90일 이내
캐나다	- ICT, BV, 전문직종사자에 대하여 일정 거주 및 자격 요건 명시
호주	- ICT, BV, 전문직종사자에 대하여 입국 및 일시적 거주 요건 명시
뉴질랜드	- 상업적 주재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서비스 공급하는 전문직(5개 분야로 구분)의 입국 및 일시적 거주에 대한 요건 명시
인도	- BV, ICT, 전문가 일정 거주기간과 자격요건으로 양허
인도네시아	- ICT에 대해 일정 자격요건 및 체류기간하에서 양허 - 이사, 관리자, 기술전문가/고문은 최대 2년 체류 허용; ICT(관리자, 기술전문가)에 대한 ENT
말레이시아	- ICT, BV 양허(자격요건)
필리핀	- 필리핀인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 허용 - 그 외 ICT, BV 양허 내용 불포함
태국	- BV, ICT 양허(자격요건)

자료: WTO(1994a-1994l)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나. DDA 협상

2001년 DDA 협상이 시작된 이후 초기 단계에 인도가 DDA 협상의 최우선 사항으로 Mode 4 자유화를 제기하면서 DDA 서비스 협상에서 Mode 4를 활발하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Dawson(2013)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DDA 서비스 협상에서 Mode 4 자유화의 주요 우선사항(CSS, IP, ICT, BV 및 기타 범주에 대한 신규양허 또는 양허개선, ENT의 철폐 또는 상당한 축소, 체류기간 및 갱신 가능성에 관한 보다 큰 구체성(specificity)과 명확성, 상업적 주재와 인력이동의 단절 등)에 집중하라는 권고를 받았으며, 2005년 개최된 홍콩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DDA 서비스 협상에서 Mode 4 양허 수준을 개선하자는 것에 합의하였다.[25] 이와 같은 DDA 서비스 협상의 기조 속에서 WTO 회원국들은 DDA 서비스 1차양허안 및 수정양허안에 Mode 4 양허 개선 사항을 다수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DDA 협상 전반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Mode 4 자유화에 대한 논의 또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08년 Signaling Conference 이후 현재까지 DDA 서비스 협상에서는 Mode 4 분야에 있어 개도국과 선진국의 큰 입장 차이로 인해 논의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26]

DDA 협상이 출범하고 주요 분야인 서비스 협상이 전개되면서 분야별 양허 개선을 위한 양자간·복수국간 request/offer 협상이 이루어졌다. request/offer 협상에서 개도국은 선진국에 대해 Mode 4가 다루는 기술수준을 전문직(professional)이나 관리자 외에 그보다 낮은 수준인 기술자(technicians)나 부전문가(assistant professionals)까지 포함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선진국은 이에 대해 거부를 표명하였고,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Mode 4 시장접근을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개도국이 수용하지 않았다.[27] 이처럼 서비스 분야의 re-

25) Dawson(2013), *op. cit.*, p. 11 참고.
26) 전게서, pp. 12~14 참고.

quest/offer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은 선진국이 Mode 3 자유화로 큰 이익을 보는 만큼 개도국도 Mode 4 자유화를 확대하여 이익을 누려야 하지만, UR 협상 이후 선진국의 Mode 4 양허개선은 미미하다는 주장이 있었다.[28] 그러나 선진국은 개도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선진국의 관심 분야인 CSS 및 IP 분야의 신규양허 또는 개선에 더 집중하였다.

DDA 서비스 협상에서 국가간·복수국간 request/offer 협상 결과를 반영한 각국의 DDA 서비스 1차양허안 또는 수정양허안[29]을 살펴보면, 선진국·중진국을 중심으로 CSS 및 IP의 신규양허 또는 양허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고, Mode 4 범주의 유형별 정의가 공통된 문구로 수정되었으며, 각종 요건의 완화와 ENT 요소가 삭제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Mode 4 유형별 체류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는 많이 발견되지 않으며, 기술수준이 낮은 인력의 이동에 대해 양허하는 사례도 없는 것이 확인되었고, 다자차원에서는 고용시장 접근을 허용한다는 약속을 하는 경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선진국에서 CSS 및 IP를 중심으로 양허 개선이 이루어진 반면 선진국 중에서 미국은 UR 당시의 양허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차이도 보인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미국의 정책기조가 전환되면서 통상협상에서 Mode 4를 다루지 않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일부 개도국(태국, 인도 등)은 CSS를 중심으로 Mode 4 개방을 확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지만,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대부분의 개도국은 UR 양허에서 전혀 개선되지 않거나 미미한 개선 사항만을 포함하는 양허안을 제출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 2-6]과 같다.

---

27) 전게서, pp. 12~13 참고.
28) 전게서, p. 12 참고.
29) 단, 일부 국가는 DDA 서비스 1차양허안을 제출한 이후 수정양허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WTO(2005c-2005n) 및 WTO(2006) 참고.

표 2-6. 주요국의 DDA 서비스 Mode 4 양허 현황

국가	주요 양허개선 내용
한국	- ICT, BV, SS 정의 수정; 일정 거주기간과 자격요건 완화 - 일부 전문기술직(10개 분야/직종) CSS 양허
미국	- UR 양허 내용에서 불변
EC(EU)	- CY를 제외 모든 회원국 ICT, BV 양허; ICT, BV 정의 수정 - CY, LT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일정 자격요건, 체류기간 제한하에서 CSS 양허; CSS 대상 업종 확대(18개 업종 → 21개 업종) - IP 양허 추가 · CY, LT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양허 · 자격요건, 제한사항, 체류기간 부과 · 대상 업종은 법률 포함 6개 업종
일본	- ICT, IP, BV 정의/분류 수정; 일정 거주기간/자격요건 완화 - 법률서비스공급자 범위 확대 - UR 당시 IP 양허 ⇒ DDA에서 일부 전문기술직 CSS 신규양허(MA)
캐나다	- ICT 거주기간 확대, 해당 직책의 자격요건 완화 - BV의 범위 확대 - CSS, IP의 정의와 자격요건, 거주기간 명시
호주	- ICT, IE(Independent executive), BV 정의 및 직무의 범위(내용) 명시, 입국 및 거주요건 완화 - 일부 전문기술직 CSS 양허(MA) - 일시 입국자의 배우자의 거주요건 명시
뉴질랜드	- ICT, ISS(Independent Service Suppliers), BV, 기타로 새롭게 분류하여 각 전문직의 정의 및 직무의 범위(내용) 명시 - 일부 전문직의 입국 및 거주 요건 완화
중국	- WTO 가입 당시 ICT, BV, SS에 대해 일정 체류기간과 자격요건으로 양허 - DDA에서 양허내용 불변
인도	- BV, ICT의 거주기간과 요건 수정; 전문가 조항 삭제 - CSS, IP 싱규 양허; 일정 거주기간과 자격요건 부여
인도네시아	UR 당시 ICT만 양허; 체류기간이 여타 국가보다 매우 짧은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체류기간 연장(갱신)도 제한 - DDA에서 BV(체류기간 최대 60일) 신규 양허
말레이시아	UR 당시 BV, ICT만 양허 - DDA에서 양허내용 불변
필리핀	UR 당시 BV, ICT 미양허하고, 필리핀인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만 입국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양허 - DDA에서 양허내용 불변

표 2-6. 계속

국가	주요 양허개선 내용
태국	UR 당시 BV, ICT만 양허 ⇒ DDA에서 BV, ICT 자격요건 구체화 - DDA에서 CSS 양허 추가(자격요건, 제한사항, 체류기간(1년 또는 계약기간 중 짧은기간) 등) ·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서비스(CPC 84100) 포함 10개 분야 양허

자료: WTO(2005c-2005n, 2006, 2007)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DDA 협상에서 선진국과 중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CSS 및 IP 신규 양허 또는 양허개선 사항을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10개 분야(직종)에 대해 CSS만을 양허하고 있지만, EC, 캐나다, 호주 등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CSS와 IP 모두를 양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국가의 CSS 및 IP 양허 현황을 살펴보면, 법률, 회계, 경영, 건축, 엔지니어링, 정보통신기술 등의 분야·직종을 공통적으로 CSS·IP 양허 대상 분야에 포함한 경우가 일반적이며, 그 외는 각국의 특수성이 반영된 차별적인 분야·직종을 포함한다. 앞서 살펴본 DDA 서비스 협상에서의 권고 내용과 다르게, CSS·IP 분야의 양허에서 일부 국가들(EC, 스위스 등)이 ENT를 두고 양허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그리고 CSS와 IP의 자격요건에서 학위요건(고등교육 학사학위 이상, 주요 분야에서는 별도의 관련 자격 취득 필요)과 경력요건 등을 요구하는데, 특히 IP의 경우 매우 긴 기간의 경력을 요구하는 사례도 많다. 마지막으로 CSS와 IP의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계약(서비스공급계약)기간 내에서만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단, 예외적인 사례는 존재).

표 2-7. 주요국의 DDA 서비스 Mode 4 CSS·IP 양허 내용

국가	범주	요건	체류기간
한국	계약서비스공급자 (CSS)	- 우리 관련 법령 및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학력, 전문자격 및 전문적 자격과 능력에 기초한 경력을 소유한 자로 한정 - 입국신청 전 해당 법인에 1년 이상 근무 필요, 소속된 자국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야 함 - 기계 및 산업설비의 설치·보수서비스, 정보기술 등 기술관련 자문서비스, 회계관련 서비스, 건축설계서비스, 경영자문서비스, 소프트웨어·데이터 운영·데이터시스템·자동차관련 특수엔지니어링 디자인 서비스 기술사 등 총 10개 분야(활동 범위) 양허	1년 또는 계약완료에 필요한 기간 중 적은 기간
EC(EU)	계약서비스공급자 (CSS)	- 학사학위나 동등한 기술자격 및 3년 경력 - 법률, 회계, 세무, 건축·도시계획·조경, 엔지니어링, 컴퓨터, R&D, 광고, 경영컨설팅, 기술시험·분석, 번역, 건설, 입지조사, 고등교육, 환경, 관광, 엔터테인먼트, 기기 판매 및 특허 관련 서비스 등의 분야에 한정. 단, CPC872 제외, ENT 적용	6개월
	독립전문가 (IP)	- 학사학위나 동등한 기술자격 및 6년 경력 - 법률, 건축·도시계획·조경, 엔지니어링, 컴퓨터, 경영컨설팅, 번역 등의 분야. 단, CPC872 제외, ENT 적용	6개월
캐나다	계약서비스공급자 (CSS)	- 학력요건 및 기타 인증 필요 - 노동시장 테스트 요구되지 않음 - 취업허가 요구됨. 엔지니어, 지질학, 건축, 임업, 도시계획, geomatics, land surveyor, FLCs, 정보통신기술전문가, 경영컨설턴트 등. 단 CPC 872 제외	1년 또는 계약완료에 필요한 기간 중 적은 기간
	독립전문가 (IP)	- 학력요건 및 기타 인증 필요 - 노동시장 테스트 요구되지 않음 - 취업허가 요구됨. 엔지니어, 지질학, 건축, 임업, 도시계획, geomatics, land surveyor, FLCs, 정보통신기술전문가, 경영컨설턴트 등	1년 또는 계약완료에 필요한 기간 중 적은 기간

표 2-7. 계속

국가	범주	요건	체류기간
일본	독립전문가 (IP)	- 법률(일본법, 자격획득국법, 특허, 해상, 공증 등), 회계·감사, 세무 등의 전문직	1-3년 (연장가능)
	계약서비스 공급자 (CSS)	- 학사학위 이상 - 엔지니어(자연과학, 엔지니어링), 인문·국제서비스 전문가(경제, 경영, 회계, 인문과학), 인문·국제서비스 전문가(외국문화)	1-3년 (연장가능)
호주	계약서비스공급자(CSS) 및 독립전문가(IP)	- 고용주 후원(employer sponsorship)요건 - 양허 직종 목록은 관보에 게재	12개월
뉴질랜드	독립전문가 (IP)	- 해당 분야에서 3~4년간의 공식 고등교육 자격 및 6년 이상의 경력 - ENT 적용	12개월
노르웨이	상업적 주재를 가진 법인이 고용하지 않은 자연인의 일시적 주재	- 취업허가 요구됨, 서비스 수요자에 의해 고용되어야 함.	3개월 또는 계약완료에 필요한 기간 중 적은 기간
스위스	계약서비스공급자 (CSS)	- 1년 이상 사전 고용요건 및 3년 경력 요건 - 법률자문, 엔지니어링, 컴퓨터하드웨어 설치 자문 및 소프트웨어 시행, 회계, 감사, 세무계획 및 준비, 건축설계, 도시조경, 경영컨설팅, 기술시험·분석, 과학기술컨설팅, 항공기 유지 및 수리 등의 분야에 한정, 단, CPC872 제외, - ENT 적용(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수 제한)	3개월

자료: 김준동 외(2008), pp. 43~44 [표 3-1] 인용(부분 수정).

2014년 현재까지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자통상에서는 UR 서비스 양허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DDA 서비스 1차양허안이나 수정양허안은 그렇지 못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DA 서비스 1차양허안이나 수정양허안은 2005년 이후 추진된 주요국의 RTAs 서비스 협상에서 기본적인 양허 수준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3. 지역무역협정(RTAs)에서 Mode 4 논의 동향

가. RTAs 현황 및 특징

2013년 11월 기준 WTO에 통보된 발효 중인 RTAs 현황을 살펴보면 총 260건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1 참고). 특히 RTAs는 1990년 당시만 하더라도 총 20건에 불과하였지만, 다자체제의 주도국인 미국이 1994년 NAFTA를 체결·발효한 이후부터 전세계적으로 RTAs 체결이 급증하는 양상이다. 아울러 DDA 협상이 교착상태로 접어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RTAs 체결 건수가 더욱 증가하여 2013년 11월 현재 RTAs 체결 건수는 2004년(총 132건)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RTA는 제한된 관심 국가와의 협정을 통해 다자체제에서 갖는 부담[30]을 회피하는 대신 협정 당사국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원하는 분야를 선택적으로 포함하여 협상을 하고, 그 결과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른 이익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주요 통상정책의 하나로 WTO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RTAs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중반까지 체결된 RTAs는 주로 상품협정을 중심으로 체결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서비스협정을 포함한 RTAs가 보다 증가하는 특징도 보여준다. 이처럼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 RTAs 체결에 있어 서비스협정이 포함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UR 협상 결과로 제정되고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된 GATS의 영향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실제, 다수의 RTAs 서비스 협상이 GATS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GATS를 따르지 않는 RTAs 중 대부분이 NAFTA 방식을 도입하는데, NAFTA도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이후 체결된 유사한 유형의 RTAs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11월 현재 전체 RTAs 중 상품 및 서비스협

30) 대표적인 것이 MFN 대우 의무이다.

정을 동시에 포함한 RTAs의 비중은 45.4%, 서비스 협정만 포함한 RTAs의 비중은 0.4%로 상품협정만을 포함하는 RTAs의 비중(54.2%)보다 낮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상품 및 서비스 협정을 동시에 포함한 RTAs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그림 2-1 참고).

그림 2-1. 세계 RTAs 협정 현황(WTO에 통보된 발효 중인 RTAs 기준)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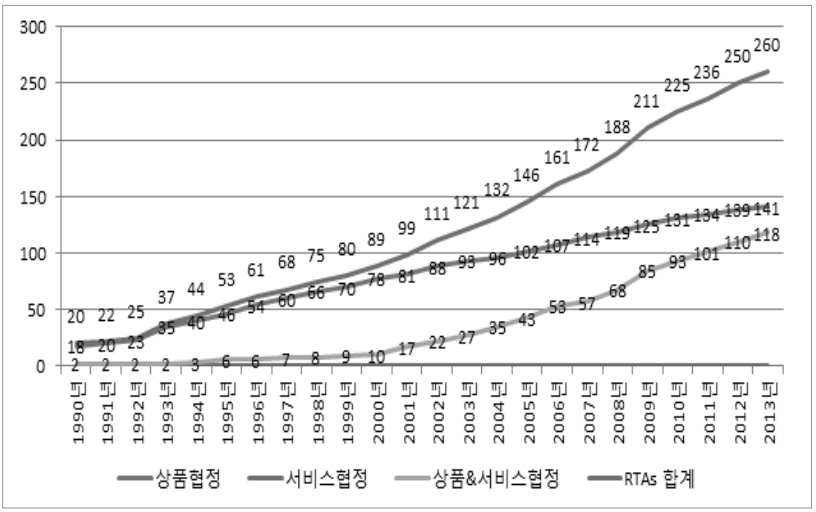

주: 상품협정 및 서비스협정을 포함하는 RTAs 발효 건수는 모든 협정이 발효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자료: WTO RTAs Database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13년 11월 기준. 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검색일: 2013. 11. 21).

2013년 11월 기준, RTAs를 체결한 협정 당사국의 구성(표 2-8 참고)을 살펴보면 전체 RTAs에서 개도국간의 협정이 140건(53.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선진국·개도국 간의 협정의 비중(34.6%, 90건)이 높고, 선진국간의 협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11.5%(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다시 상품협정만 체결된 것과 상품 및 서비스 협정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로 구분하면, 상품협정만을 포함하는 RTAs(141건)의 경우 개도국 간의 RTAs가 매우 높은 비중(62.4%)을 차지

하고, 선진국·개도국간의 협정(24.1%)과 선진국간의 협정(13.5%)은 낮은 비중을 보인다. 반면, 상품 및 서비스협정 모두를 포함하는 RTAs(118건)에 있어서는 선진국·개도국 간의 협정이 가장 높은 비중(47.5%)을 차지하며 개도국간의 협정 또한 높은 비중(44.1%)을 보인다. 아울러 선진국간의 협정과 개도국간의 협정에서는 상품협정만을 포함하는 협정의 비중이 60%를 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체결된 협정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협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의 비중이 62.2%에 이른다. 이와 같은 RTAs 체결 현황으로 미루어보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RTAs는 서비스분야의 자유화가 주요 관심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협상에 참여하는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개도국의 서비스 시장 분야별 개방 확대(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제한 개선 중심)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 시장은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대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국이 관심을 갖는 Mode 4 자유화 확대를 주장하는 양상을 보인다.

표 2-8. RTAs 체결국의 구성

(단위: 건, %)

	선진국간 협정		선진국·개도국 간 협정		개도국간 협정		합계
전체협정	30	(11.5)	90	(34.6)	140	(53.8)	260
상품협정	19	(13.5)	34	(24.1)	88	(62.4)	141
	(63.3)		(37.8)		(62.9)		(54.2)
서비스협정	1	(100.0)	0	(0.0)	0	(0.0)	1
	(3.3)		(0.0)		(0.0)		(0.4)
상품&서비스 협정	10	(8.5)	56	(47.5)	52	(44.1)	118
	(33.3)		(62.2)		(37.1)		(45.4)

주: 1)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기준은 UNCTAD의 분류에 따른다.
2) 음영으로 표시된 괄호 안의 값은 전체, 상품, 서비스, 상품&서비스협정 합계에서 각각의 협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며, 음영이 없는 괄호 안의 값은 선진국간, 선진국·개도국 간, 개도국간 협정 합계에서 각각의 협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자료: WTO RTAs Database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13년 11월 기준. 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검색일: 2013. 11. 21).

한편 RTAs 서비스협정 유형에 대해 Latrille and Lee(2012)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GATS의 제 조문을 준용하면서 포지티브 방식의 서비스 양허표로 서비스 시장 개방 약속(일정 포함)을 명시한 GATS 형태의 협정과, GATS의 조문을 부분적으로 포함한 NAFTA 서비스협정의 조문 및 양허 방식을 활용하는 NAFTA 형태의 협정, 그리고 GATS 방식 및 NAFTA 방식을 따르지 않는 기타 형태의 협정으로 구분된다.[31] 이 연구에 따르면 2010년 11월까지 WTO에 통보된 80건의 RTAs 서비스 협정에서 NAFTA 형태의 협정이 32건(40.00%)으로 가장 많고, GATS 형태의 협정 또한 29건(36.25%)으로 많이 체결되는 양상을 보인다(표 2-9 참고). NAFTA 형태의 협정 체결 국가의 구성을 보면, 주로 미국(8건) 및 미국과 RTAs 체결 경험이 있는 국가(한국,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캐나다, 호주, 중남미국가 등)가 NAFTA 형태의 협정을 채택하는 사례가 많고, 2000년대 중반부터 체결된 RTAs 서비스협정에서 NAFTA 형태의 협정이 더 많이 체결되는 특징도 나타난다.[32]

표 2-9. RTAs 서비스협정의 유형

(단위: 건, %)

	합계	GATS 형태	NAFTA 형태	기타 형태
협정 건수	80	29	32	19
비중	100.00	36.25	40.00	23.75

주: 2010년 11월 기준 WTO에 통보된 발효 중인 FTA 서비스협정 총 80건을 기준으로 분석된 결과이다.
자료: Latrille and Lee(2012), pp. 38~39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나.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전개되는 RTAs 서비스 협상의 Mode 4 논의 동향

31) Latrille and Lee(2012), pp. 7~9, 38~39 참고.
32) 전게서, pp. 7~9 참고.

및 양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비스분야 개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 TiSA 협상 참여국, 그리고 우리의 RTAs 협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주요 국가(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기발효 RTAs 서비스 협정에서 Mode 4 양허 현황을 검토하였다.[33] 주요 관심국가의 세부 내용은 뒷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주요국의 RTAs Mode 4 양허는 GATS 발효 이후부터 추진된 RTAs에서 서비스협정과 양허표·유보목록에 포함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부터 추진된 대부분의 RTAs에 Mode 4의 양허 내용이 포함된다.[34] GATS 발효 이전에 체결된 RTAs에서 Mode 4 양허가 포함된 것은 NAFTA에 제한된다.

RTAs에서 다루는 Mode 4의 유형을 보면, WTO 출범 후 DDA 협상에서 본격적인 request/offer 협상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는 주로 상업적 주재와 관련이 있는 ICT와 다수의 국가들이 UR 서비스 양허표에 양허 유형으로 포함한 BV가 중심이고, 일부 국가만이 CSS나 IP의 양허를 포함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체결된 RTAs에서는 CSS 및 IP를 양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BV도 서비스판매자나 투자자, 무역거래자 등으로 세분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양허 유형의 구체화와 함께 상업적 주재와 관련이 없는 Mode 4의 양허가 주요 관심사로 자리잡는 특징을 나타낸다.[35] 국가 그룹별로 보면, 선진국은 CSS와 IP 모두를 양허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와는 반대로 개도국은 주로 전통적인 Mode 4 유형(BV, ICT)만을 양허하고 일부 개도국만이 CSS를 포함하고 있다.

RTAs를 체결하는 국가의 구성면에서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한 선진국·선진국 간 RTAs나 개도국·개도국 간 RTAs보다 선진국·개도국 간에 체

33) 분석 대상 국가의 도출 기준은 제3장 1절 참고.
34) 참고한 각각의 협정문은 제3장의 2~3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생략하였다.
35) 김준동 외(2008), p. 51 참고.

결된 RTAs에서 Mode 4 양허가 더 많이 포함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개도국 간의 RTAs는 일반적으로 협정 당사국간 상호 유사한 수준의 Mode 4 양허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선진국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개방을 약속하는 반면, 개도국은 UR 또는 DDA 양허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선진국의 경우 개도국의 서비스 시장접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RTAs 협상에 임함으로써 개도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라는 성과를 부분적으로 거두고, 개도국은 Mode 4 분야에서 일정한 협상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추진된 RTAs Mode 4 양허 내용을 보면,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GATS가 규율하는 Mode 4 범위에서만 양허하고 고용계약과 같이 GATS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부속서 2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유형은 포함하지 않는다. 특히 선진국·개도국 간에 체결된 RTAs도 이와 같은 특징을 유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통상정책과 고용정책·이민정책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호주, 뉴질랜드 등 이민을 기초로 국가가 설립되고 노동력 부족 상황을 겪는 영연방 국가의 경우 고용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고용계약 포함)을 RTAs Mode 4 양허에 포함하는 등 GATS+ 양허 내용이 있다.

대부분의 RTAs에서 Mode 4 양허 유형의 기술수준은 경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임원이나 고위관리자, 높은 기술수준을 보유한 전문가(Specialists), 높은 수준의 학력요건과 (일부)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전문직(Professional)과 같이 매우 높은 수준을 포함하고 중·저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단순노동력은 배제하는 공통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선진국·개도국 간에 체결된 RTAs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개도국과 체결한 RTAs에서는 기술 수준이 매우 높지 않은 인력도 양허 대상으로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Mode 4 양허 업종은 자국에도 존재하는 일반적인 업종이 대상이지만, 중국·뉴질랜드 FTA에서는 뉴질랜드가 자국에 존재하지 않는 업종을 양허하는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 그리고 미국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Mode 4를 포함한 RTAs를 체결하였으나, 2001년부터 미국 의회가 USTR에게 Mode 4 협상에 대한 위임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RTAs에서 Mode 4 관련 양허가 제외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우리의 관심 대상이 되는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의 RTAs 협정을 분석하여 Mode 4 양허의 내용과 주요 특징을 도출하기로 한다.

제3장

주요국의 RTAs Mode 4 논의 동향 및 특징

1. 개요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제반 RTAs 협상에 유의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관심국가의 RTAs에 포함된 Mode 4 양허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RTAs Mode 4 정책 기조와 협상 전략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자 또는 복수국간에 체결되는 RTAs 협상 과정을 비롯하여 각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RTAs 협상 전반이 대외로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바, 본 연구에서는 협상 결과를 반영한 각국의 주요 RTAs Mode 4 양허 내용을 검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파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언급한다.

본 장에서 분석 대상으로 상정한 국가는 우리나라 및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요국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ASEAN 일부 개별국과의 FTA 등 다수의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면서, 영연방 3국과의 FTA와 TiSA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36] 또한

36) 2013년 12월 한·호주 FTA가 잠정 타결되었으며, 2014년 3월 한·캐나다 FTA도 타결되었다. 현재까지 한·호주 FTA 서명본만 공개되고 한·캐나다 FTA 협정문은 미공개 상태인바, 본 연구에서는 한·호주 FTA 내용까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에 TPP 협상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매우 많은 국가와 RTAs 협상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다수의 RTAs 협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의 Mode 4 협상 기조와 대응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며, 주요 협상 상대국의 Mode 4 협상 기조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비를 하는 것도 요구된다.

이와 같은 고려하에서 본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하에 분석 대상이 되는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을 도출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 3-1]과 같다.

표 3-1. 분석 대상국가

국가		관련 RTAs	Mode 4 개방 요구 수준(예상)
선진국	미국	한·미 FTA 후속조치(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W/G), TPP, TiSA	낮음
	EU	한·EU FTA 후속조치(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W/G), TiSA	낮음
	일본	한·일 FTA(잠정중단), 한·중·일 FTA, TPP, TiSA	낮음
	캐나다	한·캐나다, TPP, TiSA	낮음
	호주	한·호주 FTA, RCEP, TPP, TiSA	낮음
	뉴질랜드	한·뉴질랜드 FTA, RCEP, TPP, TiSA	낮음
개도국	중국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높음
	말레이시아	한·말레이시아 FTA, RCEP, TPP	보통/높음
	인도네시아	한·인도네시아 FTA, RCEP	높음
	베트남	한·베트남 FTA, RCEP, TPP	높음

자료: 저자 작성.

다음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RTAs Mode 4 양허 내용을 검토하고,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주요 선진국의 RTAs Mode 4 양허 내용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의 RTAs Mode 4 양허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2. 한국

가. 우리나라 RTAs Mode 4 양허의 특징

우리나라는 1998년 다자주의 중심의 통상정책에서 FTA 추진을 병행하기로 결정하였고, 1999년 우리나라의 첫째 FTA 상대국인 칠레와의 협상이 시작되었다.[37] 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2014년 3월 현재까지 9건(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터키 FTA)의 FTA가 발효되었고 3건(한·콜롬비아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의 FTA가 타결된 상태이다.[38]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Mode 4 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2005년 이전에 체결된 FTA에서는 UR 수준으로 Mode 4 양허를 했으나,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이 제출된 2005년부터 체결된 FTA에서는 기본적으로 DDA 수준을 반영한 Mode 4 양허를 기반으로 상대국의 특성에 따라 CSS 및 IP가 선별적으로 포함된다. 다만, 미국과의 FTA에서는 전반적인 Mode 4 양허 내용이 제외되었고 전문직서비스 부속서만을 포함하는 차이가 있으며, EU와의 FTA에서는 처음으로 대졸연수생을 ICT의 유형으로 포함한 차이를 보이지만, CSS 및 IP 양허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는 DDA 타결 이후 논의하자는 내용을 포함한다.

둘째, CSS 양허는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에 포함(10개 분야)된 이후, EFTA, ASEAN, 호주와의 FTA에서는 DDA와 유사한 수준(내용 및 대상 분야/직종)[39]으로 양허를 하였지만, 인도, 페루, 콜롬비아와의 FTA에서

---

37) WTO에서는 FTA를 포함하는 지역무역협정으로 RTAs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FTA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은 FTA로 통일하고, 여타 국가의 경우 RTAs로 사용한다.

38) 2014년 3월 한·캐나다 FTA의 타결이 발표되어 이 FTA를 타결에 포함하였다.

39) 한·EFTA FTA 및 한·ASEAN FTA의 경우 11개 분야(DDA 대비 "환경 엔지니어링을 제외한 엔지니어링(CPC 8672, 8673)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Professional Engineer)"를

는 각각 163개, 66개, 163개 직종 또는 활동에 대해 양허하는 등 양허 대상 분야가 확대되었다.

셋째, 우리나라는 인도와의 FTA에서 처음으로 IP를 양허하였으며, 현재까지 제한된 국가(인도 및 페루)에 대해서만 IP를 양허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은 2000년대에 들어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CSS를 비롯한 IP를 양허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IP 양허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IP 양허에 대한 우려와 협정 상대국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자가고용형태로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해 이동하는 IP는 관리가 쉽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심한 경우 사실상 고용계약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상당부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다수의 선진국과 FTA를 추진하였는데, 우리나라의 IP 개방에 관심이 많은 미국과 EU가 Mode 4를 배제하거나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겨둠에 따라 선진국과의 FTA에서 IP 개방을 쟁점화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우리나라의 FTA Mode 4 양허 내용은 GATS가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양허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Mode 4 양허 수준을 비교해 보면 호주와의 FTA에서만 부분적인 불균형 양허가 나타나며, 그 외의 FTA에서는 상호 동일한 유형, 대상 분야(업종)을 양허하는 균형 양허의 특징이 있다. 한·호주 FTA의 경우 CSS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는 10개 분야를 양허한 반면, 호주는 분야 제한을 특별히 두지 않는다.

포함)를 양허하는 반면, 한·호주 FTA에서는 우리나라가 DDA와 동일한 분야를 양허한다. 산업통상자원부(a), 「한-EFTA FTA」 협정문 및 산업통상자원부(b), 「한-ASEAN FTA」 협정문 참고.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efta(검색일: 2013. 11. 4~2014. 3. 8);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sean(검색일: 2013. 11. 4~2014. 3. 8).

표 3-2.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Mode 4 양허 개관

	양허유형				GATS + 양허	비고
	BV	ICT	CSS	IP		
한·칠레 FTA	○	○	×	×	×	UR 수준
한·싱가포르 FTA	○	○	×	×	×	UR 수준
한·EFTA FTA	○	○	○	×	×	DDA 수정양허안 수준 단 CSS 양허 분야 1개 추가(총 11개)
한·ASEAN FTA	○	○	○	×	×	DDA 수정양허안 수준 단 CSS 양허 분야 1개 추가(총 11개)
한·인도 CEPA	○	○	○	○	×	163개 전문직종 CSS/IP 양허
한·EU FTA	○	○	△	△	×	CSS/IP DDA 협상 타결 후 논의, 대졸연수생 포함
한·페루 FTA	○	○	○	○	×	66개 전문직종 CSS/IP 양허
한·미 FTA	×	×	×	×	×	Mode 4 제외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부속서 포함
한·터키 FTA	×	×	×	×	×	서비스분야 협상중
한·콜롬비아 FTA	○	○	○	×	×	163개 전문직종 CSS 양허
한·호주 FTA	○	○	○	×	×	DDA 수정양허안 수준(10개 분야) CSS 양허 호주측은 분야 제한 없음
한·캐나다 FTA	n.a.	n.a.	n.a.	n.a.	n.a.	협정문 미공개, 확인 불가

주: BV에서 파생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는 투자자, 서비스판매자 등과 동반 배우자 및 부양가족 관련 사항은 제외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c), FTA강국, KOREA 홈페이지, 우리나라의 FTA 현황에 등재되어 있는 발효 9건, 타결 3건 협정문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http://www.fta.go.kr/main(검색일: 2013. 11. 4~2014. 3. 8).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 Mode 4 양허 내용은 한·칠레 FTA 이후 한·ASEAN FTA까지는 주로 다자통상협상의 Mode 4 양허 수준을 그대로 FTA에 반영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인도와의 CEPA부터는 협상 상대국에 따라 Mode 4 양허 대상 유형을 선별적으로 다루는 등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인도, 페루, 콜롬비아 등 Mode 4 분야에 관심이 많은 개도국과의 FTA에서는 보다 확대된 Mode 4 유형이나 대상 분야·업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FTA Mode 4 양허 내용 중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는 주요 FTA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주요 기체결 FTA Mode 4 양허 내용

본 소절에서 먼저 살펴볼 우리의 특징적인 기체결 FTA는 한·EFTA FTA이다. 이 FTA는 CSS 양허를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의 Mode 4 양허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한다. [표 3-3]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EFTA FTA는 Mode 4 양허 유형에 ICT(임원, 고위관리자, 전문가), BV, SS, 그리고 CSS를 포함한다.[40] 여기에서 BV, ICT의 정의와 요건은 UR 서비스 양허표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CSS의 정의와 요건 또한 마찬가지다. 이 협정에서 Mode 4 양허 유형별 체류기간은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과 마찬가지로 BV, SS는 최장 90일 이내만 허용하고, CSS의 경우 1년 이내의 계약(서비스공급계약)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BV, SS, CSS 모두 체류기간을 갱신해주지 않는다. 이와 다르게 ICT의 경우 최장 3년의 체류기간을 허용하지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갱신해준다. 앞서 잠시 언급된 바와 같이 한·EFTA CSS 양허 내용은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의 CSS 양허 내용과 동일하지만 양허 대상 분야에 환경엔지니어링을 제외한 엔지니어링(CPC 8672, 8673)이 하나 더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다. 이 협정의 CSS 요건을 보면 외국 서비스 공급기업이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우리나라 법인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CSS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문제, 즉 도급계약의 사실상 고용계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한다.[41] 또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수적 제한이 가능하다는 제한을 포함한다.[42] 이와 같은 한·EFTA FTA Mode 4 양허 내용은 이후 체결된 한·ASEAN FTA에 동일하게 반영되었다.

---

40) 산업통상자원부(a) 참고.
41) 산업통상자원부(a), pp. 140~143 및 김준동 외(2008), p. 50 참고.
42) 산업통상자원부(a), pp. 140~141 참고.

표 3-3. 한·EFTA FTA Mode 4 양허 내용

유형		요건	체류기간
BV		- ICT의 임원 또는 고위관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상업적 주재 설립의 책임이 있는 자 - 대한민국 내에 주재하지 않아야 하며, 직접적인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을 불허	90일 이내 갱신 불허
SS		- 대한민국 내에 주재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보수 수취를 하지 않는 자연인 - 서비스공급자를 위해 서비스 판매 교섭 목적으로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 - 일반 대중에게 직접 서비스 판매 또는 공급 금지	90일 이내 갱신 불허
ICT	임원	- 서비스 공급 기업의 피고용인으로, 입국신청일 직전 1년 이상 해당 기업에 고용된 자이며, 경영 의사결정자 - 서비스의 실질적 공급과 관련된 업무 직접수행 금지	최장 3년 조건 충족시 갱신 가능
	고위 관리자	- 조직의 부서를 1차적으로 지휘하며, 업무를 통제하거나 직원의 인사조치 권한과 재량권을 보유한 자로, 전문서비스 공급자 외에 감독자는 불포함 - 1차적으로 서비스 공급행위에 종사하는 자 불포함	
	전문가	- 조직 내에서 고도의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지식을 보유하고 해당 기업의 서비스, 연구설비, 관리 등에 독점적 지식을 지닌 자	
CSS		- 대한민국에 상업적 주재를 하지 않은 법인의 피고용인으로 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 - 서비스 공급 기업은 공급되는 서비스 최종 소비자인 대한민국 법인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 - CSS 형태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연인은 해당 법인의 피고용인으로 입국허가 신청 전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 - 관련 분야에 필요한 학문적, 전문적 자격과 전문적 능력에 기초한 경험을 보유한 자 - 대한민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 - 업종별 구체적 약속에서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적 제한 설정 가능 - 11개 분야 양허	1년 이내의 계약기간 갱신 불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a)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한·EFTA FTA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Mode 4 양허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협정은 한·인도 CEPA이다. 우리나라는 한·인도

CEPA에서 처음으로 IP를 양허하였을 뿐만 아니라 CSS 및 IP의 양허 대상이 되는 분야·직종 또한 163개에 이르는 등 이전의 기체결 FTA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Mode 4 개방 약속이 이루어졌다.[43] 이 협정에 포함된 CSS의 정의는 한·EFTA FTA와 매우 유사하다. 반면 새로 도입된 IP의 정의를 보면,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련한 적합한 교육 및 그 밖의 자격을 갖추고 다른 쪽 당사국의 인과 서비스 공급 계약하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영업자" 라고 명시되어 있다.[44] 여기에서 IP도 서비스공급계약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CSS와 유사하지만, 서비스 공급을 상대국 법인의 피고용인이 아닌 상대국의 자가고용형태 자영업자가 맡고, 서비스를 수요하는 주체 또한 법인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다만, 한·인도 CEPA에서는 IP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같은 협정 제8.2조 제2항 차의 주석에 "각 당사국은 협정 발효 후 2년 내에 IP가 이민법을 위반하는 경우 IP의 계약 상대방을 법인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 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45] 그리고 이 협정 제8.3조에서는 여타 Mode 4 양허 유형과는 다르게 CSS와 IP에 대해 수적 제한을 두거나 노동시장 영향평가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라는 금지 조항을 두지 않고 있어 국내 여건에 따라 CSS와 IP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46] 한·인도 CEPA에서 CSS 및 IP 전문가 기준은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의 CSS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한·인도 CEPA 제8.2조 2항 바의 전문가 정의에서 인도의 고등교육체계를 반영하여 학력요건으로 "최소 3년 이상의 학업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에서의 중등교육과정 이후의 학위(또는 그러한 학위에 상응하는 것)를 취득" 해야 하며, "규제가

43) 산업통상자원부(d), 「한·인도 CEPA」 협정문 참고. http://www.fta.go.kr/main/ situation/kfta/lov5/in/(검색일: 2013. 11. 4~2014. 3. 8).
44) 전게서, 제8.2조, 2(j) 인용.
45) 전게서, 제8.2조, 2(j)의 주석을 일부 인용.
46) 같은 협정의 제8.3조에서 BV와 ICT의 경우 수적 제한이나 노동시장 영향평가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전게서, 제8.3조 참고.

적용되는 전문직의 경우 해당 분야의 특정화된 등록・허가 또는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7]

한·페루 FTA는 Mode 4 양허 내용 전반(일반적인 Mode 4 양허 유형을 비롯한 CSS・IP 양허내용)이 한·인도 CEPA와 대부분 같다.[48] 다만 한·페루 FTA는 CSS・IP 양허 대상 직종이 66개이며, 이들의 자격을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인도 CEPA와 차이가 있다.[49]

3. 주요 선진국

가. 미국

1985년 미국·이스라엘 FTA가 체결·발효[50]된 이후 미국은 2014년 3월 현재까지 총 20건의 RTAs를 체결·발효한 상태이다.[51] 미국·이스라엘 FTA는 상품협정만 포함한 것이며, 미국의 기체결 FTA에서 서비스협정을 처음 포함한 것은 NAFTA의 출발점인 미국·캐나다 FTA이다.[52] 미국의 RTAs 체결 내역을 살펴보면 1990년대까지는 전술한 미국·이스라엘 FTA와 NAFTA(미국·캐나다 FTA 포함) 뿐이며, 그 외는 2000년대 들어 발효되었다. 또한 미국·이스라엘 FTA는 상품협정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NAFTA부터 그 이후에 체결된 RTAs는 모두 상품협정과 함께 서비스협

---

47) 전게서, 제8.2조, 2(f) 일부 인용 및 참고.

48) 산업통상자원부(e), 「한·페루 FTA」 협정문 참고.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pe/(검색일: 2013. 11. 4~2014. 3. 8).

49) 전게서, 제11.9조, 전문직 종사자의 정의 및 관련 주석 참고.

50) WTO RTAs DB에서 명시된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WTO, RTAs Database, 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검색일: 2013. 11. 21).

51) USTRa, Free Trade Agreements 참고.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검색일: 2013. 12. 6~2014. 3. 8).

52) 미국·캐나다 FTA는 1988년 체결되고 1989년부터 발효되었다. 이후 1990년부터 멕시코가 참여하는 3국간의 FTA에 대한 교섭이 시작되어 1992년 NAFTA가 타결되고 1994년부터 발효되었다. 손병해(1994), pp. 448~452 참고.

정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이 되는 Mode 4 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미국·캐나다 FTA를 포함한 NAFTA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체결·발효된 미국·싱가포르 FTA 및 미국·칠레 FTA까지는 Mode 4 양허를 포함한 반면, 이후 체결 · 발효된 RTAs의 경우 Mode 4 장(chapter)이나 관련 부속서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NAFTA의 Mode 4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다음으로 미국·싱가포르 FTA 및 미국·칠레 FTA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Mode 4를 포함하지 않는 주요 협정인 미국·호주 FTA와 한·미 FTA를 간략하게 다루고자 한다.

NAFTA 협정문에서 Mode 4 관련 조항은 이 협정의 Part 5, chapter 16 (기업인의 일시입국(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에 포함된다.[53] NAFTA Article 1603은 일시입국의 부여를, Article 1605는 일시입국 및 자격의 상호인정을 다루는 작업반 설치를, 그리고 Article 1608에는 Mode 4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Annex 1603에 Mode 4의 대상이 되는 유형(사업상방문자(BV), 무역업자와 투자자(T&I), 기업내전근자(ICT), 전문가(Professionals))별로 일시입국에 대한 회원국의 의무와 일부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Article 1603의 부록(Appendix)에서 세부 요건을 다루고 있다. NAFTA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Mode 4를 RTAs 협정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ode 4 대상의 유형에 BV, T&I, ICT 외에 전문가(Professionals)를 포함한다는 점이다.[54] NAFTA 협정문에서 전문가의 이동 양허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대상 직종은 총 63개[55]

53) 2013년 12월 6일 현재 USTR 홈페이지 오류로 NAFTA 협정문은 열람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NAFTA 협정문상의 Mode 4 관련 조항은 Appleton(2007, pp. 390~403)을 참고하였다.

54) 전게서, pp. 390~403 및 김준동 외(2008), pp. 57~59 참고.

55) NAFTA 협정문 Appendix 1603.D.1에 따르면 전문가에 포함되는 직종은 회계사, 건축사 등 일반전문가(General Professional)가 25개, 치과의사 등 의료·관련 전문가(Medical/Allied Professional)가 12개, 과학자(Scientist)가 23개, 그리고 교사(Teacher)가 3개이다. Appleton(2007), pp. 398~402 및 김준동 외(2008), p. 58 참고.

이고 Appendix 1603.D.1에 규정된 자격요건[56]을 충족해야 하며, 별도의 체류기간은 협정에 포함하지 않고 각국의 법에 따르고, 국별로 허용하는 Mode 4 대상 전문가 수가 차이를 나타낸다.[57] 또한 이 협정에 포함된 작업반 설치·운영 조항(Article 1605)은 2000년대에 체결된 미국의 주요 RTAs에 포함된 전문직 서비스 부속서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된다. 그리고 Stephenson and Hufbauer(2010)에 따르면 미국은 NAFTA를 계기로 협정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trade NAFTA visa'를 발급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도 나타난다.[58]

이처럼 199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RTAs에서 전문가를 포함하는 Mode 4 양허를 하였으나, 2001년 9월 미국 테러사태가 발생한 이후부터 이민법과 출입국법을 강화하는 조치가 시행되면서 이민정책 전반을 관할하는 미국 의회가 USTR에 Mode 4 협상에 대한 위임권을 부여하지 않게 되었다.[59] 이에 따라 미국은 2002년부터 새로 추진한 RTAs에서 Mode 4 분야를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다만, 미국은 당시 협상을 전개했던 싱가포르 및 칠레와의 FTA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전문가까지 포괄하는 Mode 4 양허를 하였다.

미국은 싱가포르 및 칠레와의 FTA에서 NAFTA와 유사한 내용, 즉 Mode 4 대상 유형에 BV, T&I, ICT와 함께 전문가[60]를 포함하고, 별도의

---

56) 이 협정에서 전문직종별 최소 교육요건 및 대체자격 기준에 따르면 양허 대상 전문가에 대해 고등교육 4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나 별도의 자격을 취득 할 것을 요구한다. Appleton(2007), pp. 398~402의 Appendix 1603.D.1 참고.

57) NAFTA에서 여타 국가는 협정 상대국에 대해 전문직 쿼터를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동 협정의 Appendix 1603.D.4에서 멕시코에 대해 연간 5,500명의 쿼터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에 대해 미국·캐나다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문직종이 이동한 수 있는 한도(쿼터)를 두지 않는다. 전게서, p. 402 참고.

58)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은 미국 내에 취업한다는 근거를 제출하여 비자 취득을 할 수 있다. 'trade NAFTA visa'의 체류기간은 1년까지로 제한되나 요건 충족시 제한없이 갱신된다. Stephenson and Hufbauer(2010), *op. cit.*, pp. 38~39 참고.

59) 김준동 외(2008), p. 26 참고.

60) USTRb, "The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협정문 Appendix 11.A.2와

전문직 비자 쿼터[61]를 부여하며, 체류기간은 각국의 출입국법에 따른다는 등의 내용으로 양허를 하였다.[62] 또한 미국은 싱가포르와의 FTA에 따라 싱가포르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비자(H-1B1)를 도입하였다.[63]

마지막으로 살펴볼 미국·호주 FTA[64]와 한·미 FTA[65]에서 미국은 Mode 4를 협상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NAFTA에서 도입된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을 다루는 작업반 설치 내용(NAFTA Article 1605와 유사한 조항)과 함께 전문직의 임시면허를 논의한다는 내용이 이들 협정의 부속서에 각각 포함되었다.[66] 한·미 FTA에서 자격의 상호 인정과 임시면허를 논의하는 분야에 건축사, 엔지니어, 수의사가 포함된다.[67]

나. EU

EU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주의가 처음 시작된 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확산되기 이전인 1990년대 중반 이전에도 EU·스위스·리히텐슈타인 FTA(1973년), EU·아이슬란드 FTA(1973년), EU·노르웨이

USTRc, "The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협정문 Annex 14.3.D에 전문가 대상 목록과 각종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NAFTA에서는 대상 전문가 직종을 협정에 모두 기재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와는 2개 직종, 칠레와는 4개 직종을 명시하고 있고 협정 발효 이후 전문가 직종 목록을 교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singapore-fta/final-text(검색일: 2013. 12. 6),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chile-fta/final-text(검색일: 2013. 12. 6).

61) 미국·싱가포르 FTA 및 미국·칠레 FTA에서 미국만이 상대국에게 전문직 비자 쿼터(싱가포르 연간 5,400명, 칠레 연간 1,400명)를 두고 있다. USTRb, Appendix 11.A.3; USTRc, Appendix 14.3(D)(6) 참고.

62) USTRb; USTRc 참고.

63) H-1B1 비자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체류기간은 최초 18개월이며 요건 충족시 연장이 가능하다. Stephenson and Hufbauer(2010), *op. cit.*, p. 39 참고.

64) USTRd, "The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참고.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australian-fta/final-text(검색일: 2013. 12. 6).

65) USTRe, "The U.S.-Korea trade agreement" 참고.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korus-fta/final-text(검색일: 2013. 12. 6).

66) USTRd, Annex 12-A 및 USTRe, Annex 10-A, 김준동 외(2008), p. 60 참고.

67) USTRd, Annex 12-A와 Appendix 12-A-1 참고.

FTA(1973년), EU·시리아 FTA(1977년), EU·안도라 CU(1991년) 등 여러 국가와 다양한 형태의 RTAs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2000년에 발효된 EU·이스라엘 FTA에 이르기까지 EU가 다른 국가·지역과 체결한 RTAs 모두는 상품협정만을 포함한다.[68] EU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RTAs에서 서비스 협정이 처음 포함된 것은 2000년에 발효된 멕시코와의 EPPCCA(Economic Partnership, Politic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greement)이나, 이 또한 세부적인 서비스 무역 규범 없이 선언적인 1개 조항(같은 협정문 Article 6)만을 포함한 협정이다.[69] 또한 2000년에 발효된 모로코와의 AA(Association Agreement) 또한 Title III에 설립 및 서비스 권리(Right of Establishment and Services)를 포함하지만, 이 또한 일반적인 서비스협정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Mode 4를 다루지 않는다.[70]

EU의 기체결 RTAs에서 지금과 같이 구체성·완결성을 가지는 서비스 협정을 포함한 것은 칠레와의 AA(Association Agreement)이다.[71] 이 협정에서는 Annex VII의 서비스 양허표상 수평적 조치에서 Mode 4 대상 유형으로 사업상판매자(Business Sellers), 투자자, ICT와 더불어 CSS를 포함하고 있다. 이 협정에서 칠레는 CSS를 양허하지 않고 EU만이 33개 직종[72]을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CSS 분야별로 별도 명시하지 않은

68) EC 조약 및 EC 확대조약은 서비스협정을 포함한 경우도 있지만, 그 또한 1990년대에 들어 상품협정과 별도로 발효된 것이다.

69) EU 위원회(a), "Economic Partnership, Politic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United Mexican States, of the other part" 참고. http://ec.europa.eu/world/agreements/downloadFile.do?fullText=yes&treatyTransId=872(검색일: 2013. 12. 9).

70) EU 위원회(b), "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Kingdom of Morocco, of the other part " 참고.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6/march/tradoc_127906.pdf(검색일: 2013. 12. 9).

71) EU 위원회(c),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Republic of Chile, of the other part" 참고. http://ec.europa.eu/world/agreements/downloadFile.do?fullText=yes&treatyTransId=879(검색일: 2013. 12. 9).

72) EC(EU)의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과 비교해 보면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에 포함

경우 ENT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등교육 이상의 학위와 필요시 별도의 자격 취득을 해야 하고, 일정한 전문가 경험이나 사전고용기간 등을 요구한다.[73]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CSS가 12개월 중 3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다.[74]

2008년에 발효된 EU・CARIFORUM EPA는 Mode 4 대상 유형과 정의, 각종 요건 등은 EU・칠레 AA의 관련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협정에서는 CSS 외에 IP가 양허 대상 유형에 포함되어 있고, EU뿐만 아니라 CARIFORUM 국가(일부)도 CSS와 IP를 양허한다.[75] 양허 대상 분야(sub-sectors)를 보면 EU는 CSS에 대해 29개 분야를, IP에 대해 11개 분야를 포함하지만 Annex IV D에 따라 국가별로 양허 업종과 부과하는 각종 요건이 다소 다르다.[76] 그리고 이 협정에서 CARIFORUM 국가는 CSS와 IP 모두를 양허하지만 Annex IV F를 살펴보면 일부 국가가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만 양허를 한다.[77] EU・CARIFORUM EPA에서 CSS와 IP의 체류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지만 예외적인 국가도 있다.

2011년 7월 잠정 발효된 한·EU FTA에서는 제한된 Mode 4 양허 내용만 포함하고 향후 추가 협상의 여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78] 이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BV, ICT, 상용서비스 판매자를 양허하고, ICT의 대상에 대졸연수생을 포함한다. 아울러 CSS 및 IP의 정의는 포함하나, 이에 대한 양허는 DDA 협상 종료 후 2년 이내에 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된 CSS 양허 직종 21개 외에 12개 업종이 더 추가된 것이다. WTO(2005f) 참고.

73) EU 위원회(c), Annex VII 및 김준동 외(2008), pp. 64~65 참고.

74) EU 위원회(c), Annex VII 및 김준동 외(2008), pp. 64~65 참고.

75) EU 위원회(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CARIFORUM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Article 83 참고. http://ec.europa.eu/world/agreements/downloadFile.do?fullText=yes&treatyTransId=12969(검색일: 2013년 12월 9일)

76) 전게서, Article 83 및 Annex IV D 참고.

77) 전게서, Article 83 및 Annex IV F 참고.

78) 산업통상자원부(g), 「한·EU FTA」 협정문 참고.

마지막으로 EU가 콜롬비아 및 페루와 체결한 협정(2012년 서명)에서는 사업상 목적의 자연인의 일시 주재 chapter(Chapter 4)를 포함하고, 그 안에 Mode 4 대상 유형으로 사업상 서비스판매자, BV, ICT(GT 포함) 및 CSS와 IP를 포함한다.[79] 이 협정에서 CSS의 경우 EU와 콜롬비아 간에는 21개 직종을 양허하고, EU와 페루 간에는 14개 직종을 양허하며, 체류기간은 12개월까지로 제한하고 학력요건 및 관련 전문직 자격 취득을 요구함과 더불어 사전고용요건(1년 이상)을 요구한다.[80] 그리고 IP의 경우 EU와 콜롬비아 간에는 10개 직종을, EU와 페루 간에는 8개 직종을 양허하는데, 체류기간은 12개월까지이고 CSS와 같은 수준의 학력 및 자격취득을 요구하며, CSS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3년 이상의 전문가 경험을 요구하는 차이가 있다.[8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는 2000년대 들어 RTAs에 Mode 4를 처음 포함하였고,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의 Mode 4 분야에 대해 UR 양허 수준을 반영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체결된 RTAs에서는 DDA 수정양허안의 내용(CSS 외에 IP 포함)이 반영되고, 이들 인력의 체류기간 또한 점차 장기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EU의 Mode 4 양허 기조는 다자통상에서의 양허에 부분적인 개선만을 포함할 뿐 협정 상대국에 따라 높은 수준의 양허를 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 일본

일본은 전술한 바와 같이 UR 당시부터 BV와 ICT 외에 일부 직종에 IP를 양허하고,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에서는 CSS까지 양허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82] 일본이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부터 포함한 CSS

---

79) EU 위원회(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Colombia and Peru" 참고.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691(검색일: 2013. 12. 9).
80) 전게서, Annex IX, Appendix 2 참고.
81) 전게서, Annex IX, Appendix 2 참고.

양허는 일반적인 CSS 정의가 아닌 IP와 유사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CSS의 양허 대상도 특정 직종을 명시하지 않고 다소 넓은 범위의 분야를 규정하며, 이들 전문직에 대한 체류기간 또한 다른 국가와 다르게 1~3년까지 부여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내용이다.[83] 여기에서 CSS를 "일본 영토에 있는 공적·사적 조직과의 개인적 계약(personal contract)에 기초하여 일본 내에서 1~3년 동안(연장 가능) 일시 체류하면서 다음 중 하나의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84]으로 정의하고, 양허하는 분야는 엔지니어(자연과학, 엔지니어링), 인문·국제서비스 전문가(경제, 경영, 회계, 인문과학), 인문·국제서비스 전문가(외국문화)로 규정한다.[85] 이처럼 일본은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에서 상기의 Mode 4 유형을 CSS로 정의하지만, 외국 서비스 공급자와 일본 내의 공적·사적 조직과 '개인적 계약' 체결을 기반으로 '자연인'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당사국 '기업간' 서비스공급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CSS로 볼 수 없고 IP에 매우 근접하는 개념이 된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에 포함된 Mode 4 양허는 2000년대 들어 일본이 추진한 RTAs에서도 Mode 4 양허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본의 기체결 RTAs 중 먼저 일본·싱가포르 EPA의 경우 UR 양허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86]

다음으로 일본·멕시코 EPA(2005년 발효)를 살펴보면, Mode 4 chapter(chapter 10)를 포함하며, Annex 10에 Mode 4 대상 유형으로 BV, ICT,

---

82) WTO(2005c) 참고.

83) 전게서 및 김준동 외(2008), pp. 41~44 참고.

84) 원문은 다음과 같다. "A natural person who is engaged in one of the following activities during its temporary stay in Japan for a period of one or three years, which may be extended, on the basis of a personal contract with a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 in the territory of Japan." WTO(2005c), p. 8. 인용.

85) 전게서, pp. 8~9 참고.

86) 일본 외무성(a), "Japan-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참고.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singapore/jsepa.html(검색일: 2014. 1. 2).

투자가 외에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에서 CSS로 정의하고 있는 유형까지 포함한다.[87]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협정에서는 CSS라고 규정하지 않고 "다른 당사국에서 공적·사적 조직과 개인적 계약을 기반으로 전문직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한 당사국의 국민"[88]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문직 이동의 양허 범위를 일본의 경우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과 다르게 두 가지 분야[89]로 규정하고 있고 멕시코는 Annex 10, Appendix 2에 수록한 42개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인력의 자격은 고등교육 학위 이상의 학력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당사국의 법령(출입국법)이 규정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멕시코 EPA에서 Mode 4 대상 유형별 체류기간은 양국이 다른 기간을 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90] 이와 같은 일본의 Mode 4 양허 내용은 이후 체결·발효된 일본·칠레 EPA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포함된다.[91]

일본·칠레 EPA 이후 일본은 인도네시아[92], 필리핀[93], 베트남[94]과 EPA를 체결하면서 Mode 4 양허를 다소 확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본

---

87) 일본 외무성(b), "Japan-Mexico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참고. http://www.mofa.go.jp/region/latin/mexico/agreement/index.html(검색일: 2014. 1. 2).

88) 원문은 다음과 같다. "Nationals of a Party who Engage in Professional Business Activities on the Basis of a Personal Contract with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in the Other Party." 일본 외무성(b), Annex 10, Section 4 참고.

89) 일본이 멕시코와 체결한 EPA에서 양허한 전문직 분야는 전술한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에서 CSS 양허 대상 분야로 포함한 엔지니어와 인문·국제서비스 전문가이다. 일본 외무성(b), Annex 10, Section 4 참고.

90) 일본은 BV는 90일, ICT 및 투자가는 1~3년(연장가능), 개인계약기반 전문서비스공급자는 1~3년(연장가능)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멕시코는 BV는 30일로 제한하고 그 외의 Mode 4 유형은 1년(1년씩 4회 연장가능)의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같은 협정의 Annex 10, Appendix 2 참고.

91) 일본 외무성(c), "Japan-Chil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참고. http://www.mofa.go.jp/region/latin/chile/joint0703/agreement.pdf(검색일: 2014. 1. 2).

92) 일본 외무성(d), "Japan-Indones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참고.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indonesia/epa0708/index.html(검색일: 2014. 1. 2).

93) 일본 외무성(e), "Japan-Philippine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참고.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philippine/epa0609/index.html(검색일: 2014. 1. 2).

94) 일본 외무성(f), "Japan-Viet Nam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참고.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vietnam/epa0812/index.html(검색일: 2014. 1. 2).

이 이들 3국과 체결한 협정을 살펴보면 일본·멕시코 EPA 또는 일본·칠레 EPA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포함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양허 내용을 일부 포함한다. 먼저 이들 협정에서는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에 있는 법률, 회계, 세무 분야[95]를 양허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데, 외국법자문사(FLC: Foreign Legal Consultant)를 제외하면 일본의 법에 따라 관련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단서로 한다. 다음으로 이들 협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일본과 협정 당사국 모두가 Mode 4 부속서에서 간호활동 또는 간병활동에 종사하는 상대국의 자연인을 양허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이다.[96] 다만, 협정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은 협정 상대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일본 내에서 서비스 공급활동에 종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절차를 거친 후 일본의 관련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구한다.[97]

라. 캐나다

캐나다는 미국·캐나다 FTA 및 NAFTA를 체결하면서부터 높은 수준의 Mode 4 양허 내용을 협정에 포함해 왔다. NAFTA 체결 당시 여타 국가들이 체결한 RTAs에서는 Mode 4 양허 내용뿐만 아니라 서비스협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NAFTA에서는 BV와 T&I, ICT를 비롯하여 전문가를 포함하는 Mode 4 양허가 이루어졌다. NAFTA에서 캐나다의 Mode 4 양허 내용 중 전문가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63개 직종에 있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캐나다의 관련법에 따라 입국 및 일정 기간

95) 협정 상대국에 따라 대상 직종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10개 직종을 양허하지만, 베트남에 대해서는 일본·싱가포르 EPA와 마찬가지로 6개 직종을 양허한다. 일본 외무성(a), 일본 외무성(d), 일본 외무성(f) 참고.

96) 협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의 협정에서는 간호사, 자격취득 간병인, 관련 활동으로서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는 자연인을 양허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베트남과의 협정에서는 간호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으로 한정하여 양허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d), 일본 외무성(e), 일본 외무성(f) 참고.

97) 외무성(d), 일본 외무성(e), 일본 외무성(f) 참고.

의 체류를 허용하며, 별도의 수적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다.[98]

다음으로 살펴볼 캐나다의 기체결 RTAs는 1997년에 발효된 캐나다·칠레 FTA이다.[99] 동 협정의 Mode 4 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유형과 체류기간, 전문가에 대한 정의와 자격요건·각종조치 등에서 NAFTA와 유사하다.[100] 다만 이 협정에서는 전문가 양허 직종이 73개로 NAFTA보다 좀 더 확대된 차이가 있다.[101]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캐나다가 체결한 RTAs에서는 Mode 4 양허 대상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술자(technician)까지 포함하는 등 양허의 포괄범위가 크게 확대된다.[102]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캐나다의 기체결 RTAs는 캐나다·페루 FTA(2009년 발효), 캐나다·콜롬비아 FTA(2011년 발효) 등이다.[103] 먼저 캐나다·페루 FTA의 Mode 4 주요 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Annex 1203에서 Mode 4 양허 대상 유형으로 BV, T&I, ICT와 함께 전문가 및 기술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문가 및 기술자는 일반적인 형태 외에 독립전문가·독립기술자, 그리고 CSS 형태의 전문가·기술자가 포함된다.[104] 캐나다·페루 FTA에서 전문가 및 기술자의 학력으로 각각 중등교육 이후 4년 이상과 1년 이상을 요구하며, 양허 대상 직종으로는 전문가의

---

98) NAFTA 협정문, Chapter Sixteen: Temporary Entry for Business Persons, Article 1603, 1605, 1608, Annex 1603 및 Appendix 1603.D.1, Appleton(2007), *op. cit.*, pp. 390~403 참고.

99) 캐나다 외교통상부(a), "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 참고. http://www.international. 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hile-chili/menu.aspx?lang=en (검색일: 2014. 1. 2).

100) 전게서, Chapter K와 Annex K-03 및 하위의 Appendix 참고.

101) 전게서, Chapter K, Annex K-03, Appendix K-03.IV.1 참고.

102) Stephenson and Hufbauer(2010), p. 44 참고.

103) 캐나다·EFTA FTA는 캐나다페루 FTA보다 1개월 먼저 발효되었지만 이 협정에서는 일시입국에 대한 정의 및 향후 논의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조항(Article 13)만 포함한다. 캐나다 외교통상부(b),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anada and the States of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및 캐나다 외교통상부(c), "Canada - Peru Free Trade Agreement" 참고.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eu-ue/efta.aspx?lang=eng(검색일: 2014. 1. 2), http://www. international. 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peru-perou/peru-toc-perou-tdm.aspx?lang=eng(검색일: 2014. 1. 2).

104) 캐나다 외교통상부(c) 참고.

경우 9개 범주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해당되며, 기술자의 경우 19개 범주로 제한되어 있다(Appendix 1203.D.1). 그리고 전문가와 기술자의 체류기간은 캐나다가 1년, 페루가 6개월~1년으로 제한하고(Appendix 1203), 이들 인력에 대해서는 선승인절차, 노동증명심사(labour certification tests) 및 기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절차 등을 조건으로 하지 말아야 하며, 수적 제한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Annex 1203, Section D, 3). 다만, 각 당사국이 이들 인력이 입국하기 전에 비자 또는 동등한 요건을 취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Annex 1203, Section D, 4).

캐나다·콜롬비아 FTA도 Mode 4 양허 대상 유형(BV, T&I, ICT, 전문가 및 기술자 포함), 전문가 및 기술자 양허 직종·자격요건·과도한 요건부과 금지규정 등에서 캐나다·페루 FTA와 매우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다.[105] 그러나 이 협정의 전문가 및 기술자의 정의(Article 1209)에서 IP 또는 CSS 유형을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체류기간 또한 명시하지 않으며, 기술자의 학력요건을 중등교육 이후 2년 이상 요구한다는 점에서 캐나다·페루 FTA와 차이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2012년에 발효된 캐나다·요르단 FTA의 경우 서비스협정과 Mode 4 양허를 포함하지 않으며, 2013년에 발효된 캐나다·파나마 FTA의 경우 Mode 4 양허 대상 유형에 BV, T&I, ICT 외에 3개 범주 33개 분야의 특수 직종(Specialty Occupations)에 종사하는 사람을 별도의 체류기간 제한 없이 양허한다.[106] 캐나다·파나마 FTA의 Mode 4 양허 내용은 캐나다·페루 FTA나 캐나다·콜롬비아 FTA보다 다소 후퇴한 수준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

105) 캐나다 외교통상부(d), "Canada-Colombia Free Trade Agreement" 참고.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olombia-colombie/can-colombia-toc-tdm-can-colombie.aspx?lang=eng(검색일: 2014. 1. 2).

106) 캐나다 외교통상부(e), "Canada-Jordan Free Trade Agreement" 및 캐나다 외교통상부(f), "Canada-Panama Free Trade Agreement" 참고.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 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jordan-jordanie/index.aspx?lang=eng(검색일: 2014. 1. 2),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panama/panama-toc-panama-tdm.aspx?lang=eng(검색일: 2014. 1. 2).

마. 호주

호주는 세계적으로 RTAs가 확산되기 이전 시기인 1983년에 지리적·역사적·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발효하였으나, 이후 1990년대 말까지 다른 국가와는 RTAs 체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호주·싱가포르 FTA(2003년 발효)를 시작으로 태국, 미국, 칠레, ASEAN·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한국 등과 RTAs를 체결하였고, 현재도 다수의 양자간·복수국 간 RTAs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싱가포르 FTA, 호주·태국 FTA, 호주·미국 FTA, 호주·칠레 FTA, ASEAN·호주·뉴질랜드 FTA(AANZFTA), 호주·말레이시아 FTA, 한·호주 FTA를 검토하여 호주의 RTAs Mode 4 양허 특징을 분석하였다. 단, RTAs에서 특수성을 갖는 호주·뉴질랜드 FTA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호주·싱가포르 FTA의 Mode 4 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Chapter 11, Article 2에서 양허 대상 유형으로 BV와 ICT 외에 SS를 포함하고, 더불어 이전 호주의 양허에 포함되지 않았던 단기서비스공급자(Short-term Service Suppliers)를 Mode 4 양허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107] 이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단기서비스공급자의 제반 요건을 보면, 단기서비스공급자의 정의가 CSS는 물론 IP를 포괄하며,[108] 단기서비스 공급자는 일시체류 허가를 신청하기 전 1년 이상 서비스 계약 체결 당사자인 서비스 공급자 또는 기업에 고용되어야 하며(Article 2, 2(e)(ii)), 이동대상 인력은

107) 호주 외교통상부(a), "Singapore-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Chapter 11, Article 2, 2(e) 조항 및 김준동 외(2008), pp. 61~62 참고. http://www.dfat.gov.au/fta/safta/ (검색일: 2014. 1. 8).

108) 이 협정의 원문에서 단기서비스공급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Short-term service suppliers" means persons who are employees of a service supplier or an enterprise of a Party not having a commercial presence or investment in the other, which has concluded a service contract with a service supplier or an enterprise engaged in substantive business operations in the other Party... (중략). 호주 외교통상부(a), Chapter 11, Article 2, 2(e) 조항 인용.

같은 조항 2(c)에서 규정한 관리자(manager), 임원(executive), 전문가(specialist)이며(같은 조항 2(e)(iii)), 단기서비스공급자의 일시체류가 허용되는 분야를 전문직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로 한정하며(같은 조항 2(e)(iv)), 단기서비스공급자의 자격은 주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르며(같은 조항 2(e)(v)), 단기서비스공급자에게 3개월의 체류기간을 허용한다(Article 3).[109]

호주·태국 FTA에 포함된 호주의 Mode 4 양허 내용은 전술한 호주·싱가포르 FTA와 매우 유사하나, 여기에서는 IP까지 포함하는 CSS를 Mode 4 양허 대상으로 포함한다.[110] 이 협정의 CSS 정의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다루는 CSS의 정의가 아니라 호주·싱가포르 FTA에서 사용했던 단기서비스공급자의 정의와 유사한 것으로, CSS와 IP 모두를 포함하면서 IP의 고용시장 접근을 허용한다.[111] 한편, 호주·태국 FTA Annex 8(Commitments on Services and Investments)에서 Mode 4 양허 유형별 체류기간[112]과 세부 업종별 양허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AANZFTA는 ASEAN 10개국과 호주 및 뉴질랜드가 체결한 복수국간 FTA로, WTO에서처럼 각 국가는 AANZFTA 당사국에 동일한 내용

---

109) 호주 외교통상부(a), Chapter 11, Article 2 및 김준동 외(2008), pp. 61~62 참고.

110) 호주 외교통상부(b), "Thailand-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Chapter 10, Article 1002, b 조항 참고. http://www.dfat.gov.au/fta/tafta/tafta_toc.html(검색일: 2014. 1. 8).

111) 이 협정에서 CSS는 Article 1002.b.i에 정의된 상대국 법인과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한 국가의 서비스 공급자나 법인의 피고용인(is an employee of a service supplier or a juridical person of a Party not having a commercial presence or investment in theother Party, which has concluded a service contract with a juridical person registered and engaged in substantive business operations in the other Party; or) 또는 Article 1002.b.i에 정의된 상대국 법인과 고용 계약하에서 고용된 한 국가의 국민(is a national of a Party and employed under an employment contract by a juridical person registered and engaged in substantive business operations in the other Party)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전자는 CSS와 IP를 포함하고, 후자는 IP와 함께 고용시장접근을 허용하는 개념을 담는다. 호주 외교통상부(b) 참고.

112) 양국 모두 동 협정상의 CSS에 대해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단, 호주는 태국요리사에 대해서는 최대 4년)한다. 호주 외교통상부(b), Annex 8 및 김준동 외(2008), pp. 62~63 참고.

의 서비스 시장 개방 약속과 Mode 4 양허를 하고 있다. AANZFTA에서 호주의 Mode 4 양허 내용은 Annex 4의 Australia's Schedules of Movement of Natural Persons Commitments에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호주는 Mode 4 양허 대상 유형으로 기체결 RTAs에서 포함되었던 BV 및 ICT, CSS 외에 독립임원(IE: Independent Executives)과 배우자(단, ICT, IE, CSS의 배우자로 한정)를 신규로 포함[113]하지만, IE와 배우자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Mode 4 양허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호주의 Mode 4 양허 내용을 담은 부속서(Australia's Schedules of Movement of Natural Persons Commitments) 2(D)에 규정된 호주의 CSS 정의를 보면, 기체결 RTAs와 유사하게 CSS는 독립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s/ Specialists)를 포함하고 있다. 호주는 이전에 체결한 협정에서는 CSS의 체류기간을 최대 3~4년까지 허용했지만, 이 협정에서는 CSS의 체류기간을 최초 12개월까지 허용하면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의 기체결 협정과 마찬가지로 CSS의 자격은 주재국의 기준을 충족해야한다는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장 최근에 발효된 호주·말레이시아 FTA(2013년 발효)에서 호주의 Mode 4 양허 내용은 AANZFTA와 동일하다.[114]

한·호주 FTA에서 호주의 Mode 4 양허 내용을 보면 한국의 BV(SS 포함), ICT, IE, CSS와 ICT·IE·CSS의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는 등 Mode 4 양허 유형이 AANZFTA와 매우 유사하다.[115] 특히 부속서 10-가 제1절 호주의 구체적 약속 중 11에 따르면, CSS의 정의가 "호주 내에서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호주 내에 상업적 주재를 하지 않는 한국 기업의 피고용인"으로 일반적 유형의 CSS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113) 호주 외교통상부(c),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참고. http://www.dfat.gov.au/fta/aanzfta(검색일: 2014. 1. 8).

114) 호주 외교통상부(d), "Malaysi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참고. http://www.dfat.gov.au/fta/mafta(검색일: 2014. 1. 8).

115) 산업통상자원부(f), 「한·호주 FTA」 협정문 참고.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3/au/2(검색일: 2014. 3. 8).

아니라, IP의 의미를 갖는 "호주 내에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활발히 운영되는 기업에 고용된 자" 까지 포함하고 있어 Mode 4 대상 유형이 AANZFTA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CSS의 자격에 대해서도 "무역, 기술 또는 전문 능력 및 경험이 있고 그들의 지정 직업을 위한 호주의 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필수적인 자격, 기술 및 업무 경험" 을 보유해야 한다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바.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기체결 RTAs를 살펴보면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여타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Mode 4를 양허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뉴질랜드·중국 FTA와 AANZFTA에서 뉴질랜드의 주요 Mode 4 양허 내용을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먼저 체결·발효된 중국·뉴질랜드 FTA에서 뉴질랜드의 Mode 4 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뉴질랜드는 중국에 대해 기존에 여타 RTAs에서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개방 약속을 하고 있다.[116] 이 협정문의 Annex 10에서 뉴질랜드와 중국은 자연인의 일시 체류 양허 대상에 BV, ICT, IS(Installers and Servicers)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뉴질랜드는 자연인의 일시 체류 양허 대상에는 Annex 10. Part B(New Zealand' s Commitments) 4에 열거된 중국인 전문가(Specialist Personnel)[117]를 포함하며, 자격요건(관련 자격 취득, 관련 업무경험 등을 요구,

116) 뉴질랜드 외교부(a), "New Zealand-China Free Trade Agreement" 참고. http://www.mfat.govt.nz/Trade-and-Economic-Relations/2-Trade-Relationships-and-Agreements/China/index.php(검색일: 2014. 1. 10).

117) 해당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다. Maintenance and Repair of Office Machinery and Equipment, including computers(CPC 845), Other Computer Services(CPC 849), Photographic Services(CPC 875), Duplicating Services(CPC 87904), Construction and Related Engineering Services(CPC 514, 516 and 517), other Education Services(CPC 929), and Environmental Services(CPC 9401-9406, 9409), Chinese Executives and Managers. 뉴질랜드 외교부(a), Annex 10 참고.

중국인 경영진·지배인은 1년 이상의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필요)과 체류기간 제한(초기 3년, 1회(추가 3년) 연장 가능) 등이 적용된다.[118]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Annex 11로, 여기에서는 뉴질랜드가 중국의 중의사(간호사 포함), 중국요리사, 중국어강사, 우슈강사, 중국관광가이드와 같은 숙련노동(Skilled Worker) 유형에 대해 수적 제한[119]과 자격요건[120] 및 일정 체류기간[121] 하에서 자연인의 일시고용체류(Temporary Employment Entry by Natural Persons)를 허용한다는 특징을 갖는다.[122] 환언하면 자연인의 일시고용체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용시장의 접근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중국·뉴질랜드 FTA에서 뉴질랜드가 자연인의 일시고용체류를 허용한 분야 또는 직종을 보면 뉴질랜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뉴질랜드가 고용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양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에도 뉴질랜드는 자국의 전문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 자연인의 일시고용체류를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협정에 포함하고 있다.[123]

다음으로 AANZFTA를 살펴보면, 뉴질랜드의 Mode 4 양허 내용은 Annex 4 내의 "New Zealand's Schedules of Movement of Natural Persons Commitments"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뉴질랜드는 양허 범주(cate-

118) 전게서, Chapter 10 및 Annex 10 Part B, 김준동 외(2008), pp. 65~67, 여지나(2010), pp. 61~65 참고.

119) 직종별 수적 제한은 중의사(간호사 포함)와 중국요리사는 각각 200명, 중국어강사와 우슈강사는 각각 150명, 그리고 중국관광가이드는 100명이다. 전게서, Annex 11 참고.

120) 다수가 뉴질랜드에 없는 자격으로, 중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다만 필요시 뉴질랜드 법/제도가 규정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전게서, Annex 11 참고.

121) 이들 인력의 체류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전게서, Annex 11 참고.

122) 뉴질랜드 외교부(a), Annex II, 김준동 외(2008), pp. 65~67, 여지나(2010), pp. 65~69 참고.

123) 뉴질랜드 외교부(a), Annex 11의 "Temporary employment entry for skilled workers to work in specified skilled occupations" 직종 범주 참고.

gories) 속에 BV, ICT를 비롯한 IS,[124] 독립서비스공급자(Independent Service Suppliers)를 포함하고 있다.[125] 이 중 독립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부속서에서 "상업적 주재 없이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고용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126]로 정의되며, 이에 부연하여 고급의 기술적·전문적 기량(advanced technical or professional skills)을 갖춘 독립전문가(Independent Professionals)만이 독립서비스공급자에 포함된다고 규정한다.[127] AANZFTA에서 뉴질랜드는 독립서비스공급자의 자격으로 학력요건(정규 중등교육 이후 3년 또는 그 이상의 인증된 학위나 졸업장 취득)과 경력요건(6년 또는 그 이상의 경험 보유)을 요구하며, 이들 인력의 이동에 대해서 ENT 요건을 적용하고 체류기간 제한(최대 12개월)을 둔다.[128]

4. 주요 개도국

가. 중국

중국은 WTO 가입 이후 DDA 서비스 협상에서 1차양허안 및 수정양허안을 제출하였다.[129] 여기에 따르면, 중국은 여타 서비스 분야에서는

---

124) 기계나 장비의 판매자가 그 기계 또는 장비의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설치 및 서비스를 수행하는 설치자(installer) 또는 서비스제공자(servicer)를 의미한다. 뉴질랜드 외교부(b), "ASEAN, Australia and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Annex 4, "New Zealand's Schedules of Movement of Natural Persons Commitments" 참고. http://www.mfat.govt.nz/Trade-and-Economic-Relations/2-Trade-Relationships-and-Agreements/Asean/index.php(검색일: 2014. 1. 10).

125) 전게서, Chapter 9, Article 2-5 및 이 협정의 Annex 4 참고.

126) 이 협정문에서 "Self-employed Services suppliers working on a contractual basis, without a requirement for commercial presence"로 정의하고 있다. 전게서 참고.

127) 전게서, Annex 4 "New Zealand's Schedules of Movement of Natural Persons Commitments", pp. 5~6 참고.

128) 전게서, Annex 4 "New Zealand's Schedules of Movement of Natural Persons Commitments", pp. 5~6 참고.

129) WTO(2005d) 참고.

다수의 WTO 가입 이행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추가적인 개방 약속이 포함된 반면, Mode 4 분야의 양허 내용은 WTO 가입 당시의 양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 Mode 4 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수평적 조치에서 ICT(임원, 고위관리자, 전문가)와 SS만 양허하여 여타 국가의 일반적인 Mode 4 양허 유형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SS의 경우 체류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며, ICT의 경우 체류기간을 최대 3년까지 부여한다.[130] 중국은 분야별 양허에서 일부 전문직을 중심으로 Mode 4 양허를 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해당 분야로는 의사·치과의사,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통번역서비스, 교육서비스, 호텔·레스토랑서비스 5개 분야이다.[131]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적극적인 RTAs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12건의 FTA를 체결하였다.[132] 이 중 3건의 RTAs는 홍콩, 마카오, 대만과의 협정으로 여타 국과의 RTAs와 비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중국의 기체결 RTAs에서는 ICT와 SS를 주로 포함하고, 여타 국가에서 일반적인 Mode 4 유형에 해당하는 BV에 대한 양허가 뉴질랜드와의 FTA에 처음 포함되었다는 점, 그리고 중국・뉴질랜드 FTA에서 BV에 대한 체류기간을 6개월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중국의 기체결 RTAs(일국양제(一國兩制)의 성격을 갖는 3건, 협정문 미발표 1건(스위스와의 FTA) 제외)에서 CSS는 ASEAN과의 FTA에서 처음 포함되었으며, 이후 체결된 싱가포르와의 FTA에도 동일한 CSS 양허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협정에서 CSS 양허 대상 분야는 9개[133]이며,

---

130) ICT 양허 내용에는 체류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지만, 중국 현행 제도에서는 1년간의 체류기간을 부여(갱신 가능)한다. WTO(2005d) 참고.

131) 전게서 참고.

132) 중국 상무부(a), China's Free Trade Agreements 참고. http://fta.mofcom.gov.cn/english/index.shtml(검색일: 2014. 1. 16).

133) CSS 양허 분야는 회계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서비스, 도시계획서비스(일반 도시계획 제외),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교육서비스, 관광서비스이다. 중국 상무부b, "China-ASEAN FTA" 및 중국 상무부(c), "China-Singapore FTA" 참고. http://fta.mofcom.gov.cn/topic/chinaasean.shtml

체류기간은 1년까지 허용한다.

중국의 기체결 RTAs Mode 4 양허의 특징을 보면, ASEAN 국가에게만 CSS를 추가적으로 양허[134]하고 그 외의 국가와의 RTAs에서는 자국의 Mode 4 양허 수준 확대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반면, 뉴질랜드와의 FTA에서는 중국의 Mode 4 양허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뉴질랜드측에게는 매우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여 양허를 받아냈다는 차이를 보인다.[135] 그리고 중국은 일부 RTAs(중국·ASEAN FTA 및 중국·싱가포르 FTA)에서 CSS를 양허하고 있지만, 그중 다수의 내용은 기존의 분야별 양허에 명시하였던 내용이며, 신규로 포함된 분야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중국은 의사·치과의사 등에 외국 취득 자격을 인정하지만, 이와 관련해 시험을 요구하고 단기면허만 발급하는 방식을 취한다.[136]

나.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UR 서비스 양허표에서 Mode 4에 대해 ICT와 BV만을 양허하고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에서는 UR 서비스 양허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137]

WTO(1994j)에 따르면 UR 당시 ICT의 유형에 고위임원, 기관별 두 명의 전문가(specialists or experts)를 포함하며, 체류기간은 1년을 부여하고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BV는 체류기간을 최대 90일까지 허용한다. 다만 말레이시아의 UR 서비스 양허표에서는 ICT의 유형 외에 기타의 유형으로 전문가(specialists or experts)와 전문직(professionals)

(검색일: 2014. 1. 16), http://fta.mofcom.gov.cn/topic/ensingapore.shtml(검색일: 2014. 1. 16).

134) 중국 상무부(b) 및 중국 상무부(c) 참고.

135) 뉴질랜드 외교부(a) 참고.

136) WTO(2005d), 중국 상무부(a), 중국 상무부(b), 중국 상무부(c), 뉴질랜드 외교부(a) 참고.

137) WTO(1994j) 및 WTO(2006) 참고.

을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BV와 구분하여 최대 체류기간을 2년까지 부여하고 있는데, 전문가(specialists or experts)에 대해서는 시장심사를 요건으로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고 전문직(professionals)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법이 요구하는 학력, 자격, 업무경력 등을 요건을 갖추고 말레이시아 전문가 단체에 등록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한다. 말레이시아 UR 서비스 양허표의 기타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이들 두 유형은 내용면에서 전자는 CSS에 가까우며 후자는 IP와 유사한 정의를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DDA 서비스 수정양허안 제출 이후 체결된 한·ASEAN FTA 및 말레이시아·일본 EPA에서도 말레이시아는 UR 서비스 양허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Mode 4를 양허하는 등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낸다.[138]

2010년에 발효된 AANZFTA에서 말레이시아는 Mode 4 양허를 크게 개선한 것으로 파악된다.[139] 이 협정의 수평적 조치에서는 ICT 및 기타의 전문가 및 전문직의 체류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설치자·유지자(installers or maintainers)(체류기간 최대 6개월)를 기타의 유형으로 포함하는 Mode 4 양허 개선은 있었다. 그리고 첨부된 분야별 Mode 4 양허 내용에서 회계, 세무, 건축, 엔지니어, 통합엔지니어, 도시계획, 조경, 컴퓨터관련서비스, R&D서비스, 광고서비스 등의 기타사업서비스, 데이터·메시지전송서비스, 모바일데이터서비스, 영화·비디오테입·음반배급서비스, 기타교육서비스, 상업은행·직접보험회사 등의 일부 금융서비스, 일부 의료서비스, 수의서비스, 호텔·레스토랑, 기타엔터테인먼트서비스, 테마파크, 스포츠이벤트관리서비스, 해상운송대리점 등에 대해

138) 산업통상자원부(b) 및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부(MITI)(a), "the Malaysia-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참고. http://www.miti.gov.my/cms/content.jsp?id=com.tms. cms.section.Section_5451c5df-c0a8156f-2af82af8-a1ebb9df(검색일: 2014. 1. 16).

139)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부(MITI)(b), "Agreement Establishing the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참고. http://www.miti.gov.my/cms/content.jsp?id=com.tms.cms.section. Section_b6060aa9-c0a81573-aba0aba0-4db48447(검색일: 2014. 1. 16).

수평적 조치의 기타 Mode 4 유형 중 전문가나 전문직의 이동을 허용함(수평적 조치와 다른 경우 체류기간 명시)을 규정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IP를 허용한다는 점도 제시하는 등 기존의 여타 RTAs보다 큰 진전을 보인다.

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UR 당시 ICT와 BV만을 대상으로 양허를 하였으며, 그 수준도 ICT의 경우 이사, 관리자, 기술전문가·고문은 2년 체류를 허용하고 추가적으로 2년씩 체류를 연장(최대 2회)하며, ICT(관리자, 기술전문가)에 대해 ENT를 부과함을 명시하고, BV의 경우에도 체류기간을 60일까지 허용하고 1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다.[140] DDA 서비스 협상에서 인도네시아는 2005년 1차양허안만 제출한 상태이며, 그 내용을 보면 UR 당시의 양허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141]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RTAs Mode 4 양허 내용을 보면, 한·ASEAN FTA에서는 UR 수준으로 양허를 하였으나, 일본과의 개별 EPA에서는 일부 양허의 진전 내용을 포함한다.[142] 인도네시아가 일본과 체결한 EPA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Mode 4 양허 유형에 투자자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였으며, "민간 및 공공 조직과 개인적인 계약 기반하에서 사업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기계 및 전기 엔지니어 등)[143]" 과 "간호사 및 자격취득 간병인[144]" 의 이동을 신규로 양허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협정 당사국인 일본 측의 간호사 및 간병인 양허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140) WTO(1994i) 참고.
141) WTO(2005e) 참고.
142) 산업통상자원부(b) 및 일본 외무성(d) 참고.
143) 이 협정에 따르면 체류기간은 1년, 연장은 최대 1년씩 5회 이내로 제한된다. 일본 외무성(d) 참고.
144) 이 협정에 따르면 학위 등 자격요건을 부여하며, 자격요건 및 활동 업무에 따라 체류기간 6개월~1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다. 전게서 참고.

평가된다.

일본과의 EPA보다 늦게 타결·발효된 AANZFTA에서 인도네시아는 수평적 조치에 기존의 UR 양허 내용을 유지한다.[145] 이 FTA에서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유사하게 분야별 Mode 4 양허 내용을 첨부하지만, 말레이시아는 다수의 업종에 대해 양허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업종을 수평적 조치 외에 미양허함을 명시한다.

라. 베트남

베트남은 WTO 가입 당시 ICT와 BV, SS를 양허하였고, 컴퓨터관련 서비스(CPC 841~845, 849)와 엔지니어링서비스(CPC 8672)에 대해 CSS를 허용하였다.[146] 단, CSS의 경우 자격요건이 부과되고, 여타 국가의 CSS 양허 내용과 다르게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제한되는 특징도 나타난다.

베트남이 체결한 RTAs를 보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과의 RTAs는 WTO 가입 전후에 체결된 것으로 베트남의 WTO 가입 서비스 양허표상의 Mode 4 양허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147] 최근 체결된 AANZFTA에서도 베트남은 여타 체결국과 마찬가지로 분야별 Mode 4 양허 내용을 명시하지만, 대부분 기존의 WTO 가입 서비스 양허표에 기재된 Mode 4 양허 내용(수평적 조치 외에 미양허)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WTO 가입 양허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148]

---

145) 호주 외교통상부(c) 참고.
146) WTO(2007) 참고.
147) 산업통상자원부(b), 일본 외무성(f), 중국 상무부(b) 및 WTO(2007) 참고.
148) 호주 외교통상부(c) 참고.

제4장

통상협상에서 Mode 4 협상 대응 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먼저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와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다자통상협상과 RTAs에서 Mode 4 논의 동향과 양허의 주요 특징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에서 Mode 4 양허 특징을 살펴보고,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체결 RTAs에서 나타난 Mode 4 양허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였다. 제2장과 제3장의 검토 결과를 종합할 때 통상협상에서 다루고 있는 Mode 4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것으로 요약된다.

첫째, 일부 국가에서 예외적인 양상을 보이는 사례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다루는 Mode 4의 양허 대상은 Mode 3와 관련된 Mode 4 또는 Mode 3와 관련되지 않는 Mode 4만을 포함하면서 고용시장으로의 접근은 불허한다. 다자통상협상의 경우, UR 협상 결과를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GATS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위에서 Mode 4를 양허하였고, DDA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이 GATS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으로 Mode 4를 개방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제출한 DDA 서비스 1차양허안과 수정양허안에는 개도국들의 기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지역통상협상에서는 영연방 3국을 중심으로 개도국과 체결한 RTAs에서 고용시장 접근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개방 약속을 포함[149]하기도 하지만, 그 외의 선진국 및 개도국의 제 협정에서는 여전히 GATS의 적용 대상 범위를 따른다.

둘째, 2000년대 들어 선진국과 중진국을 중심으로 Mode 3와 관련되지 않는 Mode 4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특징이 나타난다.[150] UR 당시만 하더라도 EU나 일본 등과 같은 일부 선진국만이 제한된 직종에 대해 CSS 또는 IP를 개방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DDA 협상이 추진되면서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타 WTO 회원국에게 CSS와 IP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수의 국가가 DDA 서비스 1차양허안 또는 수정양허안에 이들 유형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151] 이와 같은 DDA 서비스 협상에서의 논의 결과에 영향을 받아 2000년대 중반 이후 체결·발효된 RTAs에서도 Mode 4 양허 대상 유형에 Mode 3와 관련되지 않는 Mode 4가 많이 포함되고 있다.

셋째, 다자·지역 통상협상의 Mode 4 논의에 임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심은 매우 다르고, 그와 같은 큰 입장의 차이가 Mode 4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통상협상을 통해 자국이 먼저 CSS와 IP 양허를 하면서 상대국 또한 이들 유형을 양허할 것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인다. 선진국은 전문직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하는 교육 및 자격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CSS와 IP를 개방함으로써 더

149) 캐나다 외교통상부(c), 캐나다 외교통상부(d), 호주 외교통상부(a), 호주 외교통상부(b), 호주 외교통상부(c), 호주 외교통상부(d), 산업통상자원부(f), 뉴질랜드 외교부(a), 뉴질랜드 외교부(b) 참고.

150) 본 보고서의 제2장 및 제3장 참고.

151) 김준동 외(2008)에 제시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DDA 양허요청 내용을 고려할 때, DDA 서비스 협상에서 CSS와 IP에 대한 개방 요구는 선진국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준동 외(2008), pp. 44~47 참고.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전문직서비스 분야에서 경쟁력과 교육 및 자격 체계가 열악한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이 CSS와 IP를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의 법·제도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해 선진국 시장으로 전문직서비스 인력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게다가 다자통상에서는 물론이고 선진국·개도국간의 RTAs에서 개도국은 선진국이 요구하는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도국은 다자·지역 통상협상의 Mode 4 양허 대상 유형에 자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숙련노동이나 저숙련노동까지 포함하자고 요구한다.

넷째,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선진국의 Mode 4 양허는 각국의 정책기조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Mode 4 분야에서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2001년 미국 테러 사태를 겪으면서 이민법과 출입국조치의 강화가 불가피해지면서 미국 의회가 더 이상 USTR에 Mode 4 협상에 대한 위임권을 부여하지 않게 되어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Mode 4를 다루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한다. 이와는 반대로, 영연방 3국은 이민국가라는 역사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이민정책과 노동정책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국가는 다자·지역 통상협상의 Mode 4 논의에서 여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인 입장을 보인다.

다섯째, 다자·지역 통상협상의 Mode 4 논의에 있어 개도국은 이중적인 입장, 즉 자국의 Mode 4 개방 확대는 하지 않으면서 선진국에게는 높은 수준으로 양허할 것을 요구한다. 앞서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Mode 4 양허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개도국은 주로 BV와 ICT를 중심으로 양허를 하고, CSS 및 IP를 포함한 양허는 미미하며, 그들이 주장하는 비전문직(숙련・저숙련 노동)을 양허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처럼 개도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와 관련된 Mode 4 양허 대상 유형은 포함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전문직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 전문가가 진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개도국이 선진국에 대해 주로 자국의 인력 진출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유형인 숙련노동자나 단순노동자까지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여섯째, 최근 세계적으로 양허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CSS 및 IP의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나 인력을 수용하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제3장 3절에서 선진국이 체결한 RTAs Mode 4 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협정문 속에 CSS 또는 IP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지만, 전문직 자격은 출입국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따른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같은 특징은 Mode 4 논의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입장을 갖는 영연방 3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다자·지역 통상협상을 통해 선진국이 CSS 또는 IP, 나아가 전문직서비스의 고용시장접근까지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자격은 전문직서비스 인력의 이동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애가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개도국들은 협정 당사국인 선진국에 대해 자격의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RTAs 협상에서 MRA를 같이 다룰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152)]

2. Mode 4 협상 대응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Mode 4 협상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도 중장기 외국인력정책의 기반 위에서 일관된 Mode 4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관심을 가져야 하

152) 김준동 외(2008), pp. 37~38 참고.

는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의 RTAs Mode 4 양허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Mode 4 양허 유형, 방식 등에 있어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선진국은 개도국과 체결하는 RTAs에서도 기존의 Mode 4 양허 패턴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을 하는 특징을 보인다. 미국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의회가 USTR에 Mode 4 협상에 대한 위임권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고 통상협상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는 영연방 3국 또한 이민정책과 노동정책의 기반 위에서 Mode 4 양허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법적, 정책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면 상대국의 과도한 개방 요구에 대응이 쉽고,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Mode 4 협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153]을 살펴보면 통상협상 관련 인력의 이동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 전문직 인력의 해외진출 수요가 증가하고, 일부 전문직의 경우 국내의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ode 4 양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매우 부족하다. 이와 같이 관련 정책의 부재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가 추진한 FTA 협상에서 협상 상대국에 따라 소위 case by case로 Mode 4 양허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데, 이는 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Mode 4 양허와 관련된 국내 제도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은 시행착오와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직면한 제반 여건을 평가하고, 그것을 근거로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통상협상과 관련된 인력이동의 중장기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전략 등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우리의 외국인정책에 담아야 하겠다.

둘째, 다자통상협상이나 복수국간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력 제고 및 기대 이익의 극대화, 나아가 세계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쟁점별로 이해를 같이 하는 관련 국가들과 공동대

153) 외국인정책위원회(2013) 참고.

응을 해야 한다. DDA 서비스 협상에서 인도와 중국이 Mode 4 자유화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많은 개도국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본격적인 협상 단계로 들어간 TiSA 협상에서도 개도국을 중심으로 Mode 4 양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전술한 두 협상에서 영연방 3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GATS의 적용 범위 내에서만 Mode 4를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Mode 4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대립이 지속되면서 세계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는 지연이 되고 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개도국들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Mode 4 개방은 각국의 고용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상협상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쟁점에 있어서는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선진국과 공동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GATS가 규율하는 Mode 3와 관련되지 않는 Mode 4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격의 인정 문제에서는 보다 유연하면서 전향적인 시각이 요구된다. 현재와 같이 수용국의 기준이나 제도에 의존해서 전문직 서비스 인력의 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은 전문가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넘어 상이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될 수 있다. 미국, EU 등 선진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전문직서비스(법률, 회계, 건축, 엔지니어링 등)는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Mode 4 양허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선진국 기업들은 Mode 4 자체의 개방 확대보다 LP 요건과 같이 Mode 1을 저해하는 요소나 합작·고용 금지 및 지분율 제한과 같이 Mode 3를 저해하는 요소를 철폐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 반면, 선진국은 중진국 및 개도국의 전문직 인력에 대해서는 자격의 취득과 유지·관리상의 차이를 들어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Mode 4 활성화의 주요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사실상의 장벽은 Mode 4 양허의 가치를 훼손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지식이나 전문성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동시에

서비스 무역 자유화 논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쟁점에 있어서는 개도국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되, 객관적이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MRA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개도국과의 FTA 협상에서 GATS가 포괄하는 범위에서만 Mode 4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원칙으로 삼고 그 내용에서는 전향적이면서 공세적인 협상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RTAs가 협정 당사국간의 관심 사항을 반영하여 협상이 전개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제2장과 제3장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외국 인력의 유입과 관련된 사안은 높은 민감성을 갖고 있어 각국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하고, 그중 일부인 GATS가 다루는 범위에 대해서만 통상협상의 테이블 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GATS의 포괄 범위를 넘어 고용시장 접근까지 양허를 하고 있는 국가들 또한 그들이 처한 여건하에서 취해진 고유한 권한의 행사일 뿐 향후 상황이 바뀌게 될 경우 보수적인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침체의 여파가 캐나다와 호주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이들 국가가 투자이민과 외국인노동자의 유입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개도국과의 FTA 협상에서 GATS 포괄범위를 벗어나는 Mode 4 양허 요구는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당사국과는 FTA 협상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반면 GATS가 다루는 CSS 및 IP 분야에는 우리나라가 많은 관심을 갖고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양허 대상의 직종이나 분야에 포함해야 하며, 협정당사국 모두가 동일한 직종·분야를 양허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전문직서비스 인력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넷째, 통상협상에서 Mode 4 양허의 출발점이 되는 전문직 직종 또는 업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전문직 양허 내용을 보면 양허하는 주요 직종 목록을 두면서 차후 전개

되는 통상협상에서는 그것에 일부 직종을 추가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경우 해당 직종별 자격요건을 기술함으로써 정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도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CSS 및 IP 양허 현황을 보면 전문직 직종의 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신규로 양허된 분야와 기존 양허에서 제외된 분야를 판단하기 어렵다. 한·EFTA FTA, 한·인도 CEPA, 한·페루 FTA에서 양허한 CSS 또는 IP 직종을 보면 상호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설명해 준다. 양허시 필요한 전문직 직종·업종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관심 분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상의 일반성을 잃을 수 있고, 상대국의 양허 요구 분야를 받아들일 경우 발생하는 제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늠하기가 어렵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국내 제도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세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가 직면한 FTA 협상에서 Mode 4 분야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의 인력수급체계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154] 우리나라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거나 공급 초과가 심한 분야를 상시 파악하면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FTA Mode 4 협상에서 CSS 및 IP 양허 협상을 전개함으로써 부족 인력의 도입과 과잉 인력의 해외진출 활성화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내의 인력수급 상황은 협정 상대국의 Mode 4 개방 요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유용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Mode 4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 전문직 인력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질이 나쁜 외국 전문직 인력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문직 자격의 취득(교육과정 포함) 및 관리 등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는 작업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155]

---

154) 조정윤 외(2013)는 국내는 물론 해외와 연계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조정윤 외(2013), pp. 304~305 참고.

155) 김준동 외(2008)와 조정윤 외(2013)도 국내의 전문직 자격 제도의 개선이 중요한

앞서 몇 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RTAs Mode 4 양허 대상이 되는 CSS 및 IP는 물론 전문직서비스 공급자의 해외취업시에도 전문가 자격 기준은 인력을 도입하는 국가의 법과 제도를 따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 및 한·EU FTA를 통해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추가적인 양허 확대도 충분히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직서비스와 관련된 다수의 분야에서 국내의 교육제도, 자격의 취득 및 유지제도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 우수 인력의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 국내 공학교육 제도만 보더라도 국내 대부분의 대학이 국제적인 기준에 인정을 받은 상태이지만, 그 기준을 충족해서 학위를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자격 취득 후에도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자격 취득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Mode 4 양허 대상 인력을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를 보면, 인도 및 페루와의 협정에서 IP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포함하지만, 제한된 인력과 관리상의 불가피한 어려움으로 인해 유입된 외국 인력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전술한 한·인도 CEPA 및 한·페루 FTA에서는 IP의 불법체류 방지를 목적으로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경제활동의 현장을 고려해 보면 IP의 불법체류보다 CSS 및 IP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국내 사업자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환언하면, 국내 사업자가 CSS 및 IP 형태로 외국 전문직서비스 인력을 도입해서 다른 기업에게 파견을 보내는 등의 불법적 사용은 국내의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SS 및 IP 인력을 포함한 국내 사용기업까지 상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김준동 외(2008), pp. 292~294 및 조정윤 외(2013), pp. 96~97, 302~304 참고.

참고문헌

• 국문자료

김준동 외. 2008.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26-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손병해. 1994. 『경제통합론』. 법문사.

여지나. 2010. 『중국 FTA 협상에서 인력이동에 관한 연구: 중국 기체결 FTA 협정문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10-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국인정책위원회. 2013.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조정윤 · 김미숙 · 김상호 · 김민규 · 김승택. 2013. 『FTA 체결에 따른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 방안』. 기본연구 2013-2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영문자료

Appleton, B. 2007. *NAFTA: Legal Text and Interpretive Materials*, Volume 1. Thomson/West.

Dawson, L. 2013. "Labour Mobility and the WTO: The Limits of GATS Mode 4." *International Migration*, Vol. 51(1), pp. 1-23.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Latrille, P. and J. Lee. 2012. "Services rules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How diverse and how creative as compared to the GATS multilateral rules?" Staff Working Paper ERSD-2012-19. WTO.

Nielson, J., and D. Taglioni. 2003. "A Quick Guide to the GATS and Mode 4." OECD-World Bank-IOM 공동 세미나 발표자료(세미나개최일: 2003. 11. 12-14.).

OECD. 2003. "Service Providers on the Move," *Policy Brief*.

Stephenson, S., and G. Hufbauer. 2010. "Increasing Labor Mobility: Op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Engman, M. *et al*. eds.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New Trends and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Countries*, pp. 29-66. The World Bank.

_____. 2011. "Labor Mobility." Chauffour, J-P., and J-C, Maur ed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Policies for Development: A Handbook*, pp. 275-306. The World Bank.
WTO. 1994a. GATS/SC/48.
____. 1994b. GATS/SC/90.
____. 1994c. GATS/SC/31.
____. 1994d. GATS/SC/46.
____. 1994e. GATS/SC/16.
____. 1994f. GATS/SC/6.
____. 1994g. GATS/SC/62.
____. 1994h. GATS/SC/42.
____. 1994i. GATS/SC/43.
____. 1994j. GATS/SC/52.
____. 1994k. GATS/SC/70.
____. 1994l. GATS/SC/85.
____. 2005a. TN/S/W/31.
____. 2005b. TN/S/W/32.
____. 2005c. TN/S/O/JPN/Rev.1
____. 2005d. TN/S/O/CHN/Rev.1
____. 2005e. TN/S/O/IDN/Rev.1
____. 2005f. TN/S/O/EEC/Rev.1
____. 2005g. TN/S/O/KOR/Rev.1
____. 2005h. TN/S/O/USA/Rev.1
____. 2005i. TN/S/O/CAN/Rev.1
____. 2005j. TN/S/O/AUS/Rev.1
____. 2005k. TN/S/O/NZL/Rev.1
____. 2005l. TN/S/O/IND/Rev.1
____. 2005m. TN/S/O/PHL
____. 2005n. TN/S/O/THA/Rev.1
____. 2006. TN/S/O/MYS/Rev.1
____. 2007. GATS/SC/142 참고.

• 온라인 자료

뉴질랜드 외교부a. "New Zealand-China Free Trade Agreement." http://www.mfat.govt.nz/Trade-and-Economic-Relations/2-Trade-Relationships-and-Agreements/China/index.php(검색일: 2014. 1. 10).

_____b. "ASEAN, Australia and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http://www.mfat.govt.nz/Trade-and-Economic-Relations/2-Trade-Relationships-and-Agreements/Asean/index.php(검색일: 2014. 1. 10).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부(MITI)a. "The Malaysia-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ttp://www.miti.gov.my/cms/content.jsp?id=com.tms.cms. section.Section_5451c5df-c0a8156f-2af82af8-a1ebb9df(검색일: 2014. 1. 16).

_____.b. "Agreement Establishing the ASEAN-Australia-New Zealand FTA." http://www.miti.gov.my/cms/content.jsp?id=com.tms.cms.section.Section_b6060aa9-c0a81573-aba0aba0-4db48447(검색일: 2014. 1. 16).

산업통상자원부a.「한-EFTA FTA」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efta(검색일: 2013. 11. 4~2014. 3. 8).

_____b.「한-ASEAN FTA」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asean(검색일: 2013. 11. 4~2014. 3. 8).

_____c. 우리나라의 FTA 현황. http://www.fta.go.kr/main(검색일: 2013. 11. 4~2014. 3. 8).

_____d.「한·인도 CEPA」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in(검색일: 2013. 11. 4~2014. 3. 8).

_____e.「한·페루 FTA」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5/pe(검색일: 2013. 11. 4~2014. 3. 8).

_____f.「한·호주 FTA」협정문. http://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3/au/2(검색일: 2014. 3. 8).

_____g.「한·EU FTA」협정문. http://www.fta.go.kr/eu(검색일: 2013. 11. 4~2014. 3. 8).

일본 외무성a. "Japan-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singapore/jsepa.html(검색일: 2014. 1. 2).

_____b. "Japan-Mexico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ttp://www.mofa.go.jp/region/latin/mexico/agreement/index.html(검색일: 2014. 1. 2).

_____c. "Japan-Chil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ttp://www.mofa.go.jp/region/latin/chile/joint0703/agreement.pdf(검색일: 2014. 1. 2).
_____d. "Japan-Indones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indonesia/epa0708/index.html(검색일: 2014. 1. 2).
_____e. "Japan-Philippines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philippine/epa0609/index.html(검색일: 2014. 1. 2).
_____f. "Japan-Viet Nam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vietnam/epa0812/index.html(검색일: 2014. 1. 2).
중국 상무부a. China's Free Trade Agreements. http://fta.mofcom.gov.cn/english/index.shtml(검색일: 2014. 1. 16).
_____b. "China-ASEAN FTA". http://fta.mofcom.gov.cn/topic/chinaasean.shtml(검색일: 2014. 1. 16).
_____c. "China-Singapore FTA". http://fta.mofcom.gov.cn/topic/ensingapore.shtml(검색일: 2014. 1. 16).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i Korea, 초청/사증(VISA) 홈페이지.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1&catSeq=&showMenuId=8(검색일: 2014. 1. 16).
캐나다 외교통상부a. "Canada-Chile Free Trade Agreement."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hile-chili/menu.aspx?lang=en(검색일: 2014. 1. 2).
_____b.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Canada and the States of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eu-ue/efta.aspx?lang=eng(검색일: 2014. 1. 2).
_____c. "Canada - Peru Free Trade Agreement."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peru-perou/peru-toc-perou-tdm.aspx?lang=eng(검색일: 2014. 1. 2).
_____d. "Canada-Colombia Free Trade Agreement."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colombia-colombie/can-colombia-toc-tdm-can-colombie.aspx?lang=eng(검색일: 2014. 1. 2).
_____e. "Canada-Jordan Free Trade Agreement."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jordan-jordanie/index.aspx?lang=eng(검색일: 2014. 1. 2).

_____f. "Canada-Panama Free Trade Agreement." http://www.international.gc.ca/trade-agreements-accords-commerciaux/agr-acc/panama/panama-toc-panama-tdm.aspx?lang=eng(검색일: 2014. 1. 2).

호주 외교통상부a. "Singapore-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http://www.dfat.gov.au/fta/safta/(검색일: 2014. 1. 8).

_____b. "Thailand-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http://www.dfat.gov.au/fta/tafta/tafta_toc.html(검색일: 2014. 1. 8).

_____c.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http://www.dfat.gov.au/fta/aanzfta(검색일: 2014. 1. 8).

_____d. "Malaysi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http://www.dfat.gov.au/fta/mafta(검색일: 2014. 1. 8).

EU 위원회a. "Economic Partnership, Politic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United Mexican States, of the other part." http://ec.europa.eu/world/agreements/downloadFile.do?fullText=yes&treatyTransId=872(검색일: 2013. 12. 9).

_____b. "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Kingdom of Morocco, of the other part."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06/march/tradoc_127906.pdf(검색일: 2013. 12. 9).

_____c.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Republic of Chile, of the other part." http://ec.europa.eu/world/agreements/downloadFile.do?fullText=yes&treatyTransId=879(검색일: 2013. 12. 9).

_____d.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CARIFORUM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http://ec.europa.eu/world/agreements/downloadFile.do?fullText=yes&treatyTransId=12969(검색일: 2013. 12. 9).

_____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Colombia and Peru." http://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691(검색일: 2013. 12. 9).

USTRa. Free Trade Agreements 홈페이지.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

free-trade-agreements(검색일: 2013. 12. 6, 2014. 3. 8).
_____b. "The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singapore-fta/final-text(검색일: 2013. 12. 6).
_____c. "The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chile-fta/final-text(검색일: 2013. 12. 6).
_____d. "The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australian-fta/final-text(검색일: 2013. 12. 6).
_____e. "The U.S.-Korea trade agreement."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korus-fta/final-text(검색일: 2013. 12. 6).
WTO.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http://www.wto.org/english/docs_e/legal_e/legal_e.htm(검색일: 2013. 10. 22).
WTO. RTAs Database 홈페이지. 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검색일: 2013. 11. 21).

Executive Summary

Mode 4 Issues in the Trade Negotiations: Progres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Jun-Gu K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recent trade negotiations have dealt with Mode 4 issues and what policy implications have been drawn for Korea's Mode 4 negotiations and the improvement of the domestic system related to Mode 4.

This study provide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Korea's Mode 4 negotiation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et up the consistent bargaining strategy in Mode 4 issues based on medium-and long-term foreign labor policy such as immigration policy. The coherent policies are the most effective way to negotiate Mode 4 issues with developing countries. Second, as to the issues of Mode 4 coverage, Korea has to build closer cooperation with like-minded developed countries against the GATS-plus requests made by developing countries in the multinational or plur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ird, in the RTA negotiations with developing countries, whil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ick to the negotiation principle of Mode 4 whose scope is limited in the GATS, it should also take part in the discussions of professional mobility for CSS (Contractual Service Suppliers) and IP (Independent Professionals) with a prospective attitude. Forth, the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conduct in-depth research on the gap between supply and demand of the

specific labor markets to identify the prominent areas for liberalization of CSS and IP in the domestic services sectors. Fifth, in order to prevent from using foreign workers illegally and maximize economic benefits from Mode 4 liberalization, it is crucial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its own Mode 4 monitoring system. Finally, it is essential to improve and align the Korea' s professional licensure system with the global standards, which will facilitate mutual recognition for the attainment of policy objectives, such as preventing the substantial influx of the unqualified and promoting overseas employment of Korean professionals.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14년

14-01 중국 서부지역 IT제조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충칭(重慶)시, 청두(成都)시, 시안(西安)시를 중심으로 / 오종혁 · 박현정

14-02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 강준구

■ 2013년

13-01 APEC 환경상품 논의동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2012 환경상품 리스트를 중심으로 / 임경수 · 박혜리

13-02 중국 토지공급체계의 변화와 개혁과제 / 최필수 · 조성찬

13-03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유턴 유형화 및 유턴정책 개선방안 / 임민경 · 여지나

13-04 북 · 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실태와 거래관행 분석 / 이종운 · 홍이경

13-05 한 · 중 · 일 3국 환경상품 교역의 특성: 경쟁력 패턴분석을 중심으로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13-06 상하이 시 문화산업 현황과 시사점 / 노수연 · 곽주영

13-07 한 · 캐나다 수교 50주년: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 고희채 · 김종혁

13-08 중국 농촌 소비시장 특징과 진출방안: 베이징 시 근교를 중심으로 / 김부용 · 오종혁

13-09 한 · 러 비자면제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와 활용방안 / 정여천 · 박순찬 · 강부균

13-10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 김홍종 · 정성춘 · 김태윤 · 곽성일 · 이형근 · 이현진

13-11 북 · 중 관광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 김지연 · 최필수 · 임민경 · 나승권

13-12 한 · 중 · 일 3국 IT 서비스산업의 비교우위 검토: 생산성 분석을 중심으로 / 나승권 · 방호경 · 이보람

13-13 한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및 투자 협정문 분석: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 김종덕 · 엄준현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2012년

12-01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 배찬권 · 금혜윤 · 김진오

12-02 이슬람 금융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점: 수쿡을 중심으로 / 강대창

12-03 중·홍콩 CEPA 서비스 양허안 분석을 통한 한·중 FTA 서비스 협상전략 연구 / 여지나 · 박민숙

12-04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amid a New East Asian Integration with an Emphasis on FDI Flows / Choong Yong Ahn and Sung Chun Jung

12-05 Issues on Development Aid: European Perspective / Deok Ryong Yoon *et al.*

12-06 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 정지현

12-07 중국의 노무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환발해지역을 중심으로 / 김부용 · 이상훈 · 임민경

12-08 중국의 지역별 비관세장벽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이상훈 · 김부용 · 박진희 · 여지나 · 이상희 · 임민경

12-09 중국 상하이(上海) 시 고급소비재 시장 진출기업 경쟁전략 분석 및 시사점 / 노수연 · 何喜有

■ 2011년

11-01 일본의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 전략과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11-02 장쑤성(江蘇省) 태양광산업의 발전과 시사점 / 노수연

11-03 지역단위 무역피해 지원제도의 주요국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 김정곤 · 김균태

11-04 징진지(京津冀) 지역 LED 산업 현황과 시사점 / 김부용

ODA 정책연구 11-01
11-05 ODA 사업의 효과 측정을 위한 실험적 방법론 연구 / 손기태 · 김민희 · 박수경

ODA 정책연구 11-02
11-06 OD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및 국제 비교 / 권 율 · 박수경 · 이주영

ODA 정책연구 11-03
11-07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과 한국의 정책과제 / 정지원 · 정지선

ODA 정책연구 11-04

11-08 녹색기후기금의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 정지원 · 박수경 · 임소영

ODA 정책연구 11-05

11-09 국제사회의 민간부문개발 지원 현황과 한국의 추진과제 / 정지선 · 이주영

ODA 기초연구 11-01

11-10 G20 개발의제와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 / 김종일 · 김낙년 · 황원규 · 윤미경

ODA 기초연구 11-02

11-11 무역과 개발의 주요 이슈와 정책 시사점 / 강인수·송유철·유진수

11-12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한·중·일 사무국의 역할과 과제 / 정형곤 · 방호경

ODA 기초연구 11-03

11-13 주요국 무역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 한홍렬 · 이호생 · 이시욱

ODA 기초연구 11-04

11-14 ODA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 발전방향 모색: 기업의 해외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 노한균

ODA 기초연구 11-05

11-15 국제개발협력 인력양성 체계 구축 방안 / 김철희

11-16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비교 분석과 시사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 조영관

11-17 한·중·일 3국의 대캄보디아 개발협력 비교연구 / 이창재 · 정재완 · 방호경

11-18 한국 중소 제조업체의 중국 장쑤성 진출사례와 시사점 / 노수연 · 곽주영

11-19 주요국의 FTA 환경협정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김정곤 · 금혜윤

11-20 북한의 대외경제 10년평가(2001~10년) / 홍익표 · 이종운 · 김지연 · 양문수 · 이찬우 · 임수호 · 방호경

11-21 미국의 중소기업 수출확대정책 및 시사점 / 고희채 · 이보람 · 오민아

11-22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 박월라 · 최의현

11-23 중국의 희토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 김부용 · 오종혁

11-24 중국 광둥(廣東)성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 정지현 · 이혁구

11-25 중국 산둥성 투자환경 분석: 르자오, 웨이팡, 둥잉, 빈저우를 중심으로 / 이상훈

11-26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가능성 연구 / 정지현

전략지역심층연구 11-01
11-27 인도 경제개혁 20년의 평가와 전망 / 김찬완 · 임정성 · 손승호

전략지역심층연구 11-02
11-28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 방안 / 이순철 · 이영일

전략지역심층연구 11-03
11-29 한·인도 양국에서의 국가 이미지 / 조충제 · 은기수 · 박 건 · 장원봉 · 유성용 · 정혜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1-04
11-30 한·인도 그린에너지 산업 협력방안 / 김현제 · 조상민 · 박찬국

전략지역심층연구 11-05
11-31 한·인도 금융산업 협력 확대방안: 은행, 증권, 보험 / 이 웅 · 최호상 · 정무섭 · 서대교

전략지역심층연구 11-06
11-32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 강대창 · 박나리 · 유현석 · 김형종 · 이동윤

전략지역심층연구 11-07
11-33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 조홍국 · 윤진표 · 이한우 · 최경희 · 김동엽

전략지역심층연구 11-08
11-34 메콩지역 개발 전략: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 김태윤 · 신민금 · 김홍구 · 조영희 · 이요한

전략지역심층연구 11-09
11-35 동남아시아 이슬람 경제의 이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강대창 · 박나리 · 김형준 · 홍석준 · 원순구 · 손승호

전략지역심층연구 11-10
11-36 미얀마의 사회경제개발과 한국의 개발협력 구상 / 이호생 · 강인수 · 송유철 · 한홍렬

전략지역심층연구 11-11
11-37 미얀마 사회문화·정치와 발전잠재력 /
오윤아 · 강대창 · 김유미 · 박나리 · 장준영 · 최재현 · 우꼬레

전략지역심층연구 11-12
11-38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 이재영 · 김석환 · 정세진 · 박정호 · 박병인 · 나희승

전략지역심층연구 11-13
11-39 한·중앙아시아 인적지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
윤성학 · 김안국 · 김영진 · 김일겸 · 성동기 · 홍미희 · 이시영

전략지역심층연구 11-14
11-40 중앙아시아 외국인 투자의 특징과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조영관 · 주진홍 · 강명구 · 김영식 · 오영일 · 이상준

전략지역심층연구 11-15
11-41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 방안 /
이재영·이시영·이평래·윤익중·Avirmed S.

전략지역심층연구 11-16
11-42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Ⅰ
인도

전략지역심층연구 11-17
11-43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Ⅱ
동남아시아 1

전략지역심층연구 11-18
11-44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Ⅲ
동남아시아 2

전략지역심층연구 11-19
11-45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Ⅳ
중앙아시아 1

전략지역심층연구 11-20
11-46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Ⅴ
중앙아시아 2

전략지역심층연구 11-21
11-47 전략지역심층연구 논문집 Ⅵ
몽골, 터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8
11-48 브라질의 '파워외교'와 한국에의 시사점 / 김원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9
11-49 중남미의 기술지도와 한–중남미 기술협력전략 / 김종섭 · 박민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40
11-50 중동 민주화의 대내외 정치역학 / 서정민 · 인남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41
11-51 중동지역 한국학 관련 고문헌 및 역사 어문자료 기초 조사 / 이희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3
11-52 한·인도 기업의 양국 인력 활용 실태 및 적극적 활용 방안 연구 / 허재준 · 염지환 · 김봉훈 · 이건준 · 김상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4
11-53 과테말라 자원·에너지회수를 위한 유기성폐기물의 수거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 정우현 · 추장민 · 한동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5
11-54 중동·북아프리카와의 수산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알제리·튀니지·리비아를 중심으로 / 홍현표 · 장홍석 · 안재현 · 한덕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6
11-55 아시아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중심개발(TOD) 효과분석 및 종합편익 산정에 관한 연구: 서울, 방콕, 마닐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 박지형 · 성현곤 · 황보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7
11-56 중남미진출 한국기업의 사회적 공헌(CSR) 제고 방안 연구 / 오삼교 · 이남섭 · 최윤국 · 홍욱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8
11-57 한국 체류 중남미인 실태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 김창민 · 주종택 · 최진숙 · 강정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29
11-58 3개국(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자원개발 관련법 비교 연구 / 정경원 · 조희문 · 문남권 · 유동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0
11-59 중남미 인구변동 연구 / 박윤주 · 임상래 · 이상현 · 조영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1
11-60 브라질의 중앙과 지방정부 조직구조 및 기능 연구 / 김영철 · 임두빈 · 김우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2
11-61 베네수엘라 오일샌드에 대한 한국의 진출방안 연구 / 조성권 · 주미영 · 박상현 · 하상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3
11-62 최근 MENA 지역 정세변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 및 대응방안 / 문정인 · 이광열 · 고아름 · 김현규 · 김진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4
11-63 한국과 중동·북아프리카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 조홍식 · 신동찬 · 이유봉 · 황형준 · 조정익 · 정대원 · 강형석 · 김 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5
11-64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 방안 / 이충열 · 이영수 · 제상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6
11-65 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 부족 집단 간 갈등 양상에 관한 기초 연구: 마그레브지역의 베르베르족을 중심으로 / 김정숙 · 김양주 · 임기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4-37
11-66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 구조 연구 / 황병하 · 김강석 · 김선하 · 김화선 · 최지원

저자 약력

강준구(姜俊求)

경북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gkang@kiep.go.kr)

저서 및 논문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공저, 2012)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한국의 FDI에 미치는 영향』(공저, 2013) 외

Policy References 14-02

Mode 4 Issues in the Trade Negotiations: Progres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Jun-Gu Kang

2000년대 들어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가 계약서비스공급자, 독립전문가로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GATS Plus 양허 확대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또한 현재 DDA 서비스 협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도국들과 추진 중인 FTA 협상에서 Mode 4 자유화 확대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상협상에서 인력이동의 정의 및 유형을 살펴보고, 다자·지역 통상협상에서 Mode 4 논의 동향을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및 주요 이해당사국이 최근 체결한 주요 지역무역협정에서 Mode 4 양허의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Mode 4 협상 대응 방향 및 국내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ISBN 978-89-322-2390-2
978-89-322-2064-2(세트)

정가 5,000원